

상담복지현장 전문가를 위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인 쇠 : 2020년 12월

발 행 : 2020년 12월

발 행 인 : 이기순

발 행 처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8058)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79, 센텀사이언스파크(7층~10층)

T.(051)662-3134 / F.(051)662-3005

<http://www.kyci.or.kr>

인 쇠 처 : 신일디앤피

비매품

본 간행물은 여성가족부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본 기관의 사전승인 없이 내용의 일부 혹은 전부를 전재할 수 없습니다.

---

본 매뉴얼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를 부모 및 성인 친인척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피해 경험을 포함하여 부모간 또는 성인인 친인척 간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함으로써 경험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심리·정서적 폭력 피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





■ 매뉴얼 개관 | 6

## 제1장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1. 가정 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	9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16
3.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17
1) 가정폭력 발생(우려) 시 피해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개입 절차	19
2) 가정폭력 발생(우려) 시 폭력행위자 처벌·성행 교정을 위한 법적 개입 절차	25
3) 가정폭력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의무와 보호	33

## 제2장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확인	37
1) 가정폭력 접수	37
2)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42
3) 긴급구조	45
4) 욕구분석	46
5)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47
2.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	56
1) 접수	56
2) 욕구분석 및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56
[부록]	59
[서식]	133

# 매뉴얼 개관

본 매뉴얼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하여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욕구가 있는 청소년상담복지현장 전문가를 위하여 개발되었다. 다양한 접수 경로를 통해 발견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대응체계를 파악하고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위기에 처한 청소년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위기개입 과정에서 상담자는 철학과 원칙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에 노출된 청소년의 회복을 가장 중요시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매뉴얼 검토,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대상 요구도 조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실무자,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 피해 전문개입 기관 전문가를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매뉴얼 초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경찰청 아동청소년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평가 및 자문을 받아 내용을 최적화 하였다.

매뉴얼의 구성 원리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매뉴얼은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고 및 연계를 통한 개입 절차를 제공한다.

셋째, 개입 과정은 센터에서 피해사실을 확인하는 경우와 유관기관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 의뢰하는 경우로 차별화 한다.

넷째, 피해 청소년에 대한 심리상담적 접근 요소를 포함한다.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관련법과 정책은 유기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 현장에서 피해 청소년을 발견 했을 때 신고 방법부터 유관기관으로의 연계과정까지의 실질적인 개입절차 뿐만 아니라 현장전문가가 알아야 할 관련법과 처벌규정, 연계기관 정보 등은 본 매뉴얼의 필수 요소이다. 더불어 피해 청소년의 효과적인 위기개입을 위해서는 현장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만나는 청소년상담사를 비롯하여, 교사, 경찰 등 다양한 전문기관과의 다각적인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 현행 제도 및 개입 서비스 등 다양한 자료를 수합하고 고찰함으로써 위기개입 매뉴얼이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구성요소를 도출하여 타당성과 신뢰성 높은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본 매뉴얼은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특성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을 구성하였다. 매뉴얼의 구성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 대한 정의와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정폭력이 청소년의 인지적, 행동적, 심리·정서적,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다루었다.

둘째,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의 주 사례기관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이용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위기청소년의 보호·지원 체계를 도식화 하여 제시하였다.

셋째, 가정폭력관련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과 법적절차 및 처리과정과 처벌규정에 대해 정리하였다.

넷째, 피해 청소년 발견 직후 정보를 수집하고 신고 및 보호, 안전관리 등에 집중하는 실질적인 개입 단계와 이해를 돕는 흐름도를 제시하였다. 더불어 피해 청소년을 발굴하여 신고, 유관기관 연계를 포함한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사후 관리 등의 전반적인 위기개입 과정에 초점을 맞추었다.

마지막으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시 예외적인 상황, 상담자가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 등을 Tip으로 소개하였다. 피해 청소년 및 전문가 인터뷰와 전문가 자문 등에서 파악한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 시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하였다. 그 외에도 가정폭력 판단 및 상담자 인권감수성을 위한 체크리스트, 피해 청소년의 위기수준 파악을 위한 체크리스트 및 평정 척도, 가정폭력 관련 법령, 유관기관 리스트, 연계 관련 각종 양식 등의 내용을 '부록'에 추가하였다.





## 1 장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에 대한 이해

## 1. 가정 내 청소년 폭력에 대한 이해

## 가. 가정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정의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 포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 라. 동거하는 친족

본 매뉴얼에서는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를 부모 및 성인인 친인척으로부터 직접적인 폭력 피해 경험을 포함하여 부모간 또는 성인인 친인척 간의 폭력을 직·간접적으로 목격함으로써 경험하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 심리·정서적 폭력 피해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에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연령을 「청소년 기본법」에 준하여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의하였다.

## 나. 발생원인

가정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에게 적절한 개입을 하기 위해서는 가정폭력의 발생 원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표 1> 가정폭력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요인	특 성
자녀	미숙아 또는 병약한 출생, 까다로운 기질, 부주의함과 과잉행동, 문제행동, 비행 등
부모	심리적 장애, 알코올과 약물 남용, 아동기 학대 경험, 가혹한 신체적 훈육에 대한 신념, 자녀를 통해 충족하지 못한 정서적 욕구를 만족시키고자 하는 소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비합리적 기대, 어린 연령의 부모, 낮은 교육수준
가족	낮은 수입 및 빈곤, 안정적이지 않은 고용, 실직, 노숙, 불안정한 결혼생활, 사회적 고립, 부부간의 학대, 잦은 이사, 좁은 공간에서 사는 대가족, 혼잡한 생활환경, 높은 생활 스트레스의 신호들,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결합 및 재혼가정 등 다양한 배경의 가족
사회문화	폭력과 사회적 고립이 특징인 사회, 공원, 아동보육시설, 학령 전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센터, 가족을 지원하는 종교공동체 등의 지역사회지지가원이 거의 없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힘이나 폭력을 승인하는 문화

### 가정폭력사례 ①

#### ▶ 자신의 폭력 행위를 '훈육'이라 여기며, 자녀의 폭력피해 호소에 공감하지 못하는 양육태도

가해자 A는 피해자 B(중학교 여학생)의 친아버지이다. 피해자 B에게 학교에 가지 않는 날이면 피고인의 일을 돕도록 강제하고, 일을 돕는 날에는 15시부터 다음날 새벽 3시까지 10~20kg 가량의 통을 나르는 일을 하게 했다. 피해자B가 가해자 A의 일을 돕는 것이 싫다고 하자, 커터 칼심을 피해자에게 던져 위협했다. 피해자B가 커터 칼심을 피해 도망 갔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들어와 카메라 받침대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B가 학교에서 장학금으로 받은 30만원으로 옷 등을 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야구방망이로 피해자를 수회 때렸다. 피해자B가 상담사를 만나 가정폭력에 대한 상담을 받았다는 이유로, 집안에 있던 삽자루로 피해자 B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렸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두시간 동안 머리를 땅에 디디고 엎드리게 하는 자세(일명: 머리박아)를 하게 했다.



피해자B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일탈을 일삼는 피해자를 훈육하기 위해 꾸짖은 적이 있을 뿐 피해자에게 강제로 일을 시킨 적도, 체벌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2012고단2866 판결 발체 및 재구성)

## 다.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의 유형 및 영향

### (1)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의 유형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해지는 신체 및 정신적 폭력 행위에 대해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의 법령에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의 구체적 행위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의 유형

유형	내용	구체적 행위
신체적 폭력	가족 구성원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우발적인 사고가 아닌 상황에서 신체적 손상을 입히거나 또는 신체손상을 입도록 허용한 모든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직접적으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손, 발 등으로 때림, 꼬집고 물어뜯는 행위, 조르고 밟는 행위, 할퀴는 행위 등)</li> <li>- 도구를 사용하여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도구로 때림, 흉기 및 뾰족한 도구로 찌름 등)</li> <li>-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강하게 흔들, 신체 부위 묶음, 벽에 밀어붙임, 떠밀고 잡음, 아동 던짐, 거꾸로 매달, 물에 빠뜨림 등)</li> <li>-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에 가해지는 행위(화학물질 혹은 약물 등으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 화상을 입힘 등)</li> </ul>
정서적 폭력	가족구성원이 아동 및 청소년에게 행하는 언어적 모욕, 정서적 위협, 감금이나 억제, 기타 가학적인 행위를 말하며 언어적, 정신적, 심리적 학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원망적/거부적/적대적 또는 경멸적인 언어폭력 등</li> <li>- 잠을 재우지 않는 것</li> <li>-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li> <li>- 형제나 친구 등과 비교, 차별, 편애하는 행위</li> <li>- 가족 내에서 왕따 시키는 행위</li> <li>-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li> <li>- 아동 및 청소년을 시설 등에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짐을 싸서 쫓아내는 행위</li> <li>-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 및 청소년을 데리고 다니는 행위</li> <li>- 아동 및 청소년이 정서 발달 및 연령상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강요하는 행위(감금, 약취 및 유인, 노동착취)</li> <li>- 다른 아동 및 청소년을 학대하도록 강요하는 행위</li> </ul>

유형	내용	구체적 행위
성폭력	가족구성원이 자신의 성적 충족을 목적으로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성적만족을 위해 아동 및 청소년을 관찰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에게 성적인 노출을 하는 행위(옷을 벗기거나 벗겨서 관찰하는 등의 관음적 행위, 성관계 장면을 노출, 나체 및 성기노출, 자위행위 노출 및 강요, 음란물을 노출 하는 행위 등)</li> <li>- 아동 및 청소년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구강추행, 성기 추행, 항문추행, 기타 신체부위를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등)</li> <li>- 아동 및 청소년에게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드라이성교 등)</li> <li>- 성매매를 시키거나 성매매를 매개하는 행위</li> </ul>
방임 · 유기	방임은 보호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위험한 환경에 처하게 하거나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식주, 의무교육, 의료적 조치 등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말하며 유기란 보호자가 아동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를 뜻함	<p><b>물리적 방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li> <li>- 불결한 환경이나 위험한 상태에 아동 및 청소년을 방치하는 행위</li> <li>- 보호자가 아동 및 청소년을 가정 내에 두고 가출한 경우</li> <li>- 보호자가 친족에게 연락하지 않고 무작정 아동을 친족 집 근처에 두고 사라진 경우 등</li> <li>- 아동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사라진 경우</li> </ul> <p><b>교육적 방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호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아동 및 청소년을 학교(의무교육)에 보내지 않거나 무단결석을 방치하는 행위</li> </ul> <p><b>의료적 방임</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 및 개입을 하지 않는 행위</li> </ul> <p><b>유기</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을 보호하지 않고 버리는 행위</li> <li>- 시설 근처에 버리고 가는 행위</li> <li>- 아동 및 청소년에게 집을 나가라고 해놓고 집을 나간 아이를 찾아 나서지 않고 가출 신고도 하지 않는 경우</li> <li>- 아동 및 청소년이 집에 못 들어오게 집 비밀번호나 열쇠를 바꾸는 경우</li> </ul>
경제적인 위협	가족구성원이 아동 및 청소년을 통제하기 위해 용돈을 주지않는 것 뿐만 아니라 동의 없이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생활비 지출을 일일이 보고하게 하는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동 및 청소년의 재산 및 임금을 가로채거나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li> <li>-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 등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통제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행위</li> <li>- 재산에 관한 법률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li> <li>- 재산의 사용 또는 관리에 대한 결정 통제행위</li> <li>- 금액에 상관없이 허락없는 금전사용 금지행위</li> </ul>

〈출처: 아동권리보장원의 아동학대 유형 수정〉

## 가정폭력사례 ②

## ▶ 가정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건

사건의 가해자 A는 피해자 B(여, 13세)와 C(남, 11세)의 친어머니이다. A는 남편과 별거하고 있던 중 OO복지회로부터 피해자D(여, 위탁당시 14개월)를 위탁받아 함께 생활하다 정식으로 입양했다.

## ● 입양자녀인 피해자D에 대한 학대 및 그로 인한 사망

가해자 A는 25개월에 불과한, 입양한 아이를 학대(전신을 무차별적으로 폭행, 찬물을 전신에 뿌림, 매운 고추를 먹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 ● 피해자 B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

가해자 A는 친딸인 B가 미용실에서 머리를 짧게 이발하고 왔는데 화가 나, 한 손에 가위를 들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면서 “가위로 더 잘라줄 테니까, 이리오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 B의 머리가 A의 마음에 들지 않으니, “집밖에서는 절대로 머리를 풀지 않겠다. 이를 어길 시 식발함. 엄마 허락없이 뭐든지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 ● 피해자 C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가해자A는 피해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위 입양자녀 D를 학대했다. D를 무참히 가격하고, 매운 고추를 다량 먹이고, 찬물을 뿌리는 등 가혹행위를 한 후 D가 외상성 경막하 출혈, 다발성 타박상 등으로 사망하게 하여, 8개월 동안 D를 상대로 한 잔혹한 폭행 등 학대행위를 C에게 그대로 목격하게 했다.

(2014고합356 판결 발췌, 재구성)

## (2) 가정 내 청소년 폭력의 영향

어떤 유형의 폭력이든 직·간접적으로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은 발달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 가정폭력이 청소년에 미치는 영향을 영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가정폭력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구분	내 용
인지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두뇌의 외상으로 인한 인지능력의 손상</li> <li>- 학업적 동기 손상, 낮은 학업성취나 학습문제</li> <li>- 회피적인 대처전략 사용: 부모님이 헤어지기를 바랐다, 집을 나가고 싶었다.</li> <li>- 낮은 문제해결능력</li> </ul>
행동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BCL의 외현화 문제행동 높음</li> <li>-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ADHD)</li> <li>- 반항적·공격적인 행동, 이후 반사회적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li> <li>- 과도한 신체적·언어적 공격성을 보이거나 회피의 패턴을 보임</li> <li>- 이른 음주행위, 알코올 및 약물의 높은 위험, 가출, 또래 폭력, 성매매 및 성폭행 범죄 등의 비행</li> <li>-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 학교생활부적응</li> <li>- 심리적 학대를 경험한 아동은 고통을 난동 부리는 것과 같이 외현화된 문제로 표현할 수 있음</li> </ul>
심리 정서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노, 쉽게 흥분, 신경질적인 경향, 높은 각성</li> <li>- 불안, 두려움과 공포</li> <li>- 충동 조절의 이상</li> <li>- 심각한 우울, 자기 보호기능의 손상, 자해, 자살 충동</li> <li>- 자아개념 및 자아기능의 손상, 정체성 형성의 어려움, 낮은 자존감</li> <li>- 정서적 무감각, 학습된 무력감</li> <li>- 트라우마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li> <li>- 부모에 대한 양가적인 태도 예) 어머니를 폭력의 피해자로, 아버지를 가해자로 이분법적인 인식을 하는 아동이 있는 반면, ‘좋은 아버지’와 ‘나쁜 남편’ 사이에서의 갈등과 고민, 피해자인 동시에 주양육자인 어머니에 대해 미안함, 죄책감, 분노 등을 느끼기도 해 양가감정(ambivalence)을 나타냄 (정혜숙, 2006; 김승경 외, 2014)</li> </ul>
사회적 영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불안정 애착관계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li> <li>- 학교부적응, 부적절한 사회 기술</li> <li>- 또래 관계 어려움, 또래 폭력</li> <li>- 폭력행동을 모델링, 강화하여 갈등해결방식으로 모방</li> <li>- 폭력 가해행위에 영향,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상호의존적 연쇄 작용</li> <li>- 청소년기 부모 폭력, 이성교제 폭력, 부부 폭력</li> <li>- 폭력의 세대 간 전이 현상</li> </ul>

## 가정폭력사례 ㉓

## ▶ 가정폭력을 당하던 청소년이 결국 가해자인 부모를 상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피고인의 부친은 가족들을 돌보지 않았다. 피고인은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가족들을 폭행하는 등 가정불화를 유발한다고 생각해왔다. 피고인의 집에서 아버지가 뚜렷한 이유없이 욕설을 하며 다가와 부엌칼을 휘둘러 피고인에게 안면 열창을 가했다. 이에 격분하여 피고인은 아버지의 가슴을 손으로 밀쳐 넘어뜨린 후 아버지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와 배 부위를 발로 각 1회 세계 걷어차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외상성뇌저부 지주막하출혈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2006고합265 판결 발체 및 재구성)

## 2.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안(2020년 6월)이 공포되면서 앞으로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피해를 당한 아동의 회복을 위해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도 국가의 책무에 포함된다. 이는 청소년에 대한 가정폭력 근절과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공적 책임이 강화되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의 역할 또한 강화되는 것이다.

가정폭력과 같은 위기청소년은 관련법의 연령 제한에 따라, 주사례관리기관이 어느 곳인지에 따라, 생활공간의 위치에 따라 서비스제공기관이 다양하게 나뉘어져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위한 보호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주무부처인 여성가족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라 정리하면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1〉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보호·지원체계



보건복지부는 아동관련 사업을 담당하는데 만 18세 미만이 주요한 기준이다. 가정폭력피해 아동의 경우 발생부터 보호, 사례종결 후 사후관리까지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들이 담당하며 생활시설과 이용시설,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가족부는 9~24세 청소년에 대한 모든 사업을 수행하는데, 특히 위기청소년 중 가정박청소년(가출청소년)과 학교밖 청소년에 대한 사업이 중심이다. 관련기관 또한 생활시설, 이용시설, 사례 관리 중점의 서비스제공기관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위기청소년 지원 전담기구인 청소년안전망 운영사업을 통해 위기청소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 3. 가정폭력 관련 법률과 처벌 규정

우리나라는 가정폭력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여러 제도와 법률을 마련하고 있다. ‘가정폭력’의 의미를 이해하고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을 통해 법적으로 무엇이 금지되어 있는지, 신고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위는 어떠한지 등에 관해 아는 것이 좋다. 아동 및 청소년이 가정폭력 피해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은 다음과 같다.

####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의 예방·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법은 가정폭력신고체계의 구축운영, 가정폭력예방·방지를 위한 교육과 홍보,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설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등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더불어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가정폭력처벌법)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 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부리를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위험 때문에 가정 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 행위 교정을 위해 제정된 법이다. 이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에 관한 특별한 절차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환경 조정과 성행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다. 아동복지법

아동이 건강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18세 미만인 사람을 ‘아동’이라 정하고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아동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약칭: 아동학대처벌법)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하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과 절차에 관한 특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림 2>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사건 발생(우려) 시 법적 절차



## 1) 가정폭력 발생(우려) 시 피해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적 개입 절차

### (1)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정의 및 개념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폭력으로 직접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보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유기·방임을 실제로 당한 청소년 외에도 피해 청소년의 형제자매 이거나 피해 청소년과 동거하는 청소년 또한 ‘피해아동 등’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폭력행위자와 피해청소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전략)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문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후략). <개정 2020. 3. 24.>

### (2) 가정폭력행위자(가해자) 정의 및 개념

「가정폭력처벌법」에서는 가정구성원으로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을 폭력행위자로 정의한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범죄처벌법」에서는 아동학대의 행위자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으로 넓게 규정하고 있으나, 아동학대범죄의 행위자는 친권자 등 18세 미만의 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유기·방임을 하는 자로 정의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7.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 아동복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 (3) 신고

「가정폭력처벌법」과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범죄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신고 할 수 있고 법적 신고의무자로서 해당 기관 종사자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신고의무 등)

-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상의 신고의무자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4) 현장출동 및 조사

가정폭력범죄 신고를 접수한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지체없이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해야 하며 18세 미만의 피해 청소년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직원과 동행할 수 있다.

\* 피해청소년이 18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

#####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 (5) 보호명령

판사가 피해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청소년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폭력행위자를 피해청소년으로부터 물리적 격리 외에도 피해청소년에게 안전한 거주 환경과 심신의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 피해청소년이 18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

#####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 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 (6) 친권상실청구 등

검사는 폭력행위자가 18세 미만 청소년의 생명에 위험을 주거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하는 등의 아동학대중상해를 범하거나 상습범인 경우에는 친권상실 또는 후견인 변경을 청구해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아동학대처벌법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제2조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의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불구 또는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상습적으로 제2조제4호가목부터 파목까지의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상습범으로 가중처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아동복지법 제19조(아동의 후견인의 선임 청구 등)

-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학교의 장 또는 검사는 후견인이 해당 아동을 학대하는 등 현저한 비행을 저지른 경우에는 후견인 변경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 (7) 그 외의 18세 미만 피해청소년의 법적 권익 보장을 위한 특례 등

피해청소년, 법정대리인, 피해청소년의 친족 등 고소 가능인의 범위를 넓게 인정하며 폭력 행위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가 가능하며, 폭력행위자와 피해청소년이 어떤 관계이든지 고소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인정하고 있다.

가정폭력 관련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피해청소년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 받지 않도록 배려를 해야 하며(성폭력처벌법 제29조 준용), 피해청소년이 법원에 증인으로 참여하는 경우에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동석을 하고(성폭력처벌법 제34조 준용), 조사 및 증인신문 과정에서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성폭력처벌법 제 36~37조 준용).

공소시효에 있어서는 피해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이 되며 해당 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7조(준용)

-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 3. 24.>

아동학대처벌법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2) 가정폭력 발생(우려) 시 폭력행위자 처벌·성행 교정을 위한 법적 개입 절차

### (1) 사법경찰관리 등의 현장출동, 조사 거부·방해 행위 금지

폭력행위자는 가정폭력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거나, 폭행·협박\*을 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피해청소년이 18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

#### 가정폭력방지법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1조(현장출동)

-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 (2) 응급조치 및 긴급임시조치

가정폭력범죄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폭력행위자와 피해 청소년을 격리하는 등의 응급조치를 해야 한다.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임시조치에서는 100미터 내의 접근 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피해청소년이 18세 미만일 경우에 해당

### 가정폭력처벌법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 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 아동학대처벌법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 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3) 임시조치

경찰관이 긴급임시조치를 했을 때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하며 검사는 가족폭력범죄 재발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직권 또는 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가정폭력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판사의 결정 하에 100미터 내의 접근 금지, 전화 등을 이용한 접근 금지, 친권·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의료기관·요양시설에 위탁,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특히 경찰관이 18세 미만의 피해 청소년에게 응급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를 했을 경우에는 48시간 이내에 검사에게 임시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아동학대처벌법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 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への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4) 사건 송치 및 수사·심리

경찰관은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검사는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범죄 수사 결과,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하여야 한다. 법원은 폭력행위자에 대한 사건을 심리한 결과 보호처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 (5) 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범죄를 수사하여 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치료·교육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 (6) 보호처분

검사는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범죄로서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폭력행위자의 접근 금지, 친권행사 제한, 보호시설에 감호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담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아동학대처벌법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7)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개입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경우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에 개입하기 위하여 현장출동, 응급조치, 임시조치, 보호처분, 보호명령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찰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폭행·협박하거나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22조(과태료)

-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 3) 가정폭력 관련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의 의무와 보호

#### (1) 신고 의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서 18세 미만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되었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수사기관으로 즉시 신고 해야 한다. 가정폭력 범죄 피해(의심)자가 18세 이상일 경우에는 직무상 신고의무를 지지 않는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 (2) 비밀엄수의 의무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위기개입에 참여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해당 건에 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 법령에 의하여 자격정지,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 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 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 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조제1항을 적용한다.

**(3)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이수 의무**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 의무 대상자로 각각 연 1회, 1시간 이상 가정폭력/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 제2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한다.

#### (4)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관련 신고자 보호

18세 미만의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아서는 안되며 신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사람에게는 법령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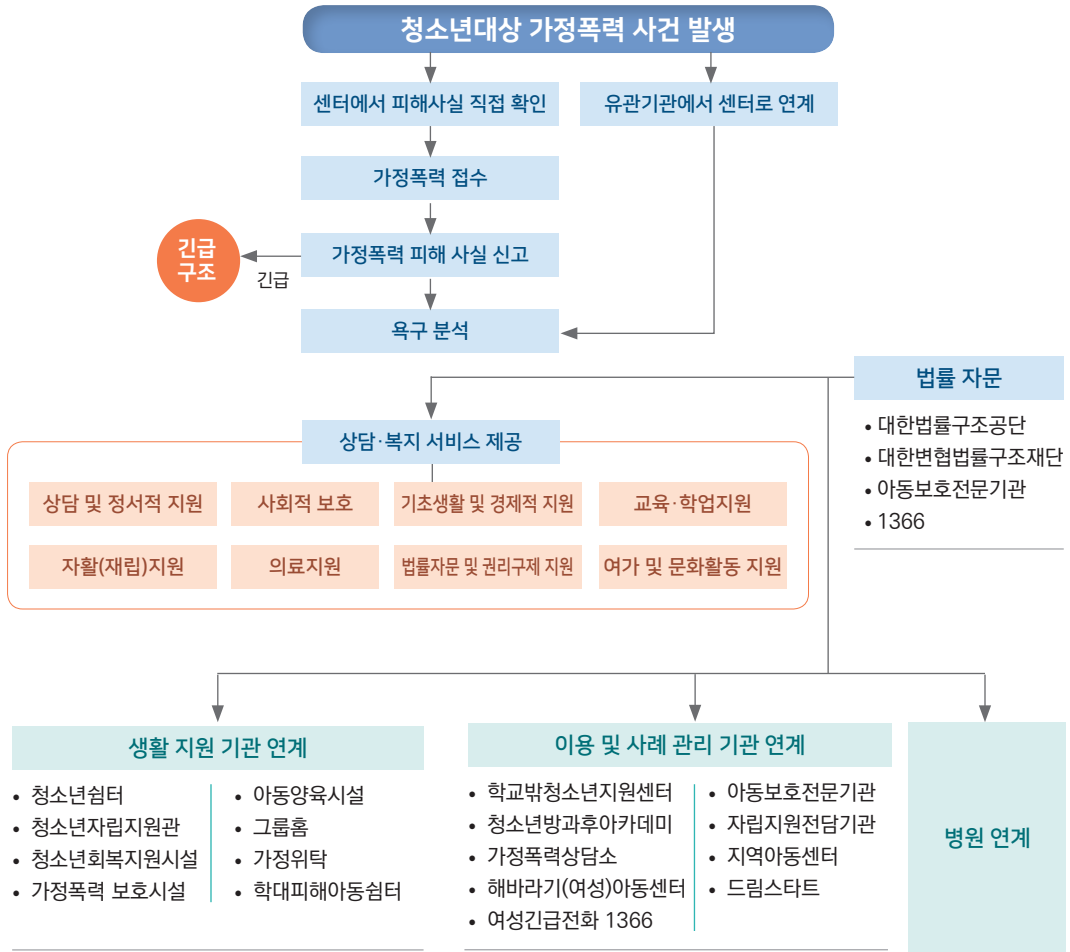
##### 아동학대처벌법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2장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의 실제

〈그림 3〉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개입절차



가정폭력피해 청소년 개입은 첫째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직접 확인하는 경우, 둘째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청소년을 의뢰하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센터에서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인지하게 된 경우에 상담자는 가정폭력 피해 사례 접수를 위해 피해 청소년의 전반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신고의무 원칙에 따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이후 상담자는 피해자에게 적합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시 법률 자문과 생활 지원 기관, 이용 및

사례관리 기관, 병원 등 전문 유관기관에 연계하여 관련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유관기관에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을 센터로 연계한 경우에는 청소년의 상황과 욕구를 파악하여 적절한 상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1. 센터에서 가정폭력 피해사실 직접확인

### 1) 가정폭력 접수

#### (1) 안정화

상담자는 가정폭력 피해 사례 접수에서 몇 가지 주요 사항을 확인하기 전에 피해 청소년을 안정화 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심리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라면 피해 상황에 대한 사실을 먼저 확인 하려하기보다 마음을 편안히 가질 수 있도록 안심 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가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는지 살피며, 기다려 줄 수 있도록 한다.

####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안정화 TIP

피해 청소년이 가정폭력 피해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한다면 ‘호흡법’과 ‘나비포옹법’을 활용하여 정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다.

#### 〈호흡법〉

- ① 편안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를 취한다.
- ② 눈을 감거나 살짝 뜨고 손은 무릎 위에 올려놓는다.
- ③ 코로 풍선을 분다는 느낌으로 아랫배가 부풀어 오를 때까지 들이 마신다.
- ④ 천천히 숨을 아랫배에서 깊숙이 내보낸다고 상상하며 내쉰다.
- 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아랫배가 묵직해지는 느낌에 집중하며,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반복한다.

#### 〈나비포옹법〉

- ① 편안한 복장으로 편한 자세를 취한다.
- ② 눈을 감거나 살짝 뜬 상태에서 심호흡한다.

- ③ 두 팔을 가슴 위에서 교차시켜 양쪽 팔뚝에 양손을 얹는다.
- ④ 나비가 날개 짓 하듯 손으로 팔뚝을 위아래로 쓰다듬거나 좌우를 번갈아 가며 ‘토닥 토닥’ 두드린다.
- ⑤ 이때 떠오르는 생각을 억지로 바꾸거나 억누르지 말고 구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처럼 흘러보낸다.
- ⑥ 10~15번 정도 양팔을 두드리고 심호흡한다.

## (2) 피해 경험 관련 사실적 정보 파악<sup>1)</sup>

피해 청소년이 안정화되고 가정 폭력 피해 사실에 대해 이야기할 준비가 되었다면 상담자는 피해 청소년의 현재 상황, 인적사항, 청소년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가정학대 발생 여부 등에 대해 확인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 접수 시 파악해야 할 정보

#### 가. 피해 청소년의 현재 상황

- 피해 청소년의 안전여부, 응급조치 필요여부, 피해 청소년의 심신상태, 가정 상황
- 피해 청소년의 호소문제(가정폭력 피해의 정황, 이후의 고통과 어려움, 받고 싶은 도움)
- 현재의 기능상태(분노, 슬픔, 죄의식, 혼란 등)
- 개인사 및 가족관계 등 치유에 필요한 내적, 외적자원
- 이전상담경험, 주변에 문제를 드러냈을 때의 경험

#### 나. 피해 청소년 기본 인적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 다. 가정폭력학대행위(의심)자 관련사항

- 성명, 성별, 추정연령,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피해 청소년과의 관계, 동거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특성 및 성향

#### 라. 가정폭력 발생여부

- 가정폭력 유형(구체적인 가정폭력행위), 가정폭력의 정도 및 심각성, 가정폭력 발생 빈도, 가정폭력의 지속성,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 상황

#### 마. 기타사항

- 추가 아동 및 청소년 존재여부(집단 내 다른 아동 및 청소년 또는 아동 및 청소년 형제·자매 존재여부), 학대행위(의심)자의 현재 상황(심신상태 등), 다른 기관과의 연계여부,

1) <서식> 접수신청서 참조

- 상담자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하여 구체적인 피해경험에 대해 내담자에게 물어볼 수 있다.
  - 최근 발생한 가정폭력은 언제 있었는지?
  - 현재 폭력으로부터 안전한지?
  - 현재까지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
  - 경찰신고 및 고소, 진단서 등 병원치료, 집을 나와 있는지?
  - 상담한 사실은 있는지?
  - 가족 중에 알고 있는 사람은 있는지?
  - 이후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 (3) 위험수준 파악

폭력 피해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 파악한 이후, 상담자는 피해 청소년이 나타내 보이는 감정적·행동적·신체적·사회적 요인들을 탐색하면서 내담자의 현재 상태를 파악해야 한다.

- 감정적 영향
  - 죄의식 : 폭력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 창피함 : 다른 사람에게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 두려움 :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두려워한다.
  - 혼란스러움 : 미워해야 할지, 사랑으로 감싸주어야 할지의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고민한다.
  - 분노 : 폭력과 혼란함에 대한 분노를 느낀다.
  - 우울증/무기력함/무력함 : 상황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감정이다.
- 행동적 영향
  - 소란스럽거나 너무 조용하다.
  - 승부욕이 너무 강하거나, 승부욕이 너무 없다.
  - 학교에 가기를 거부한다.
  - 가정을 돌본다.(예 : 엄마가 맞아서 누워있는 경우, 아빠가 가정을 떠난 경우 아이가 어른 역할을 해야 한다)
  - 과격하거나 약한 자를 괴롭힌다.
  - 감정이 없다. 빈정댄다. 남을 비난한다. 자기 방어적이다.
  - 타인의 관심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한다.

- 신체적 영향
  - 머리가 아프거나, 위가 아프기도 하며, 천식도 있다.
  - 긴장한 상태로 안절부절 못하며 집중력이 떨어진다(과잉행동장애처럼 보인다)
  - 피곤해 하고 무력해 한다.
  - 감기나 독감에 자주 걸린다.
  - 청결하지 않다.
  - 성장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 신체적 고통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 사회적 영향
  - 고립된 상태이며, 친구가 거의 없거나 친구를 멀리 대한다.
  - 친구와의 관계가 갑자기 시작되거나 갑자기 끝낸다.
  -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한다.
  - 문제 해결 방식이 적절하지 못하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참조

아래는 가정폭력(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이다. 특히 가정폭력이 의심되지만 정보부족으로 인해 가정폭력 사례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상담자는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아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정폭력(의심)사례로 보기 어려운 경우

- 청소년 발달을 비롯한 자녀 양육 관련 상담, 정보 등을 상담하는 경우
- 이혼 및 양육권 소송 등으로 상담하는 경우
- 단순 요보호아동으로 가능한 상담·복지서비스를 문의하는 경우
- 성인이 아닌 자에 의한 학대(청소년간의 폭력 등)로 인해 상담하는 경우
- 청소년 대상의 가정폭력이 의심되지만 정보부족(청소년 및 기타 인적사항에 대한 정보 부족, 주소 불명확, 신원확인 불가 등)으로 인해 청소년 대상 가정폭력 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
  - ※ 정보부족의 경우 상담사는 정보 파악을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

※ 출처: 보건복지부(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참조



### ☑ 사례 접수 및 사례판단 시 유의사항

- 피해 청소년의 사례가 현재 상담복지센터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를 파악하고 서비스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 내담자의 가정폭력 문제가 위기적인 상황인지, 혹은 지속적인 상황인지 확인한다.
- 현재 가정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지 폭력사건 발생 후 상담을 요청하고 있는지 등을 파악한다.
- 학교, 가족, 친구관계 등 피해자 주변의 지지기반을 파악하고, 가족에게 알리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가족의 개입, 역할)를 알아본다.
- 학대행위의 횟수, 피해정도, 과거 학대행위 전력 및 학대행위에 대한 은닉, 훈육 목적의 정당성 및 훈육 수단 방법의 적합성, 훈육 정도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학대여부를 판단해야 함
- 보호자의 ‘훈육(정당행위)’과 ‘학대’를 구분해야 함  
: 훈육 수단·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는 해서는 안됨

※ 출처: 보건복지부(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참조

####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접수 사례

- ▶ 청소년 A는 ‘집을 나왔는데 갈 곳이 없다’면서 청소년전화1388로 전화를 했다. 상담자는 A가 부모의 폭력과 폭언으로 집을 나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상황과 위치 등을 확인하였다.

1388청소년지원단 발견구조단원의 도움을 받아 공원에 홀로 있는 A를 긴급구조 하였다.

## 2) 가정폭력 피해 사실 신고

가정폭력 접수 단계에서 피해 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상황을 탐색하였다면 상담자는 전문기관 등 신고기관에 가정폭력 피해 사실을 신고 해야 한다. 가정폭력 피해 절차는 아래 그림과 같다. 피해 청소년 발견 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신고 기관에 가정폭력 의심내용, 피해청소년 및 폭력 방위 의심자, 신고자 정보 등에 대해 가능한 구체적인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 (1) 신고절차

전체적인 신고절차는 피해청소년을 발견 후, 신고 및 이후 지원을 결정한다.

- 가정폭력 피해와 관련해서 법적 처리를 우선시 하여 신고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피해 청소년이 피해 사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침착하게 반응하면서 경청하기
  - 신고와 관련하여 피해 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강조하며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
  - 피해 청소년의 감정을 이해하고 지지해주고 있음을 언어적 · 비언어적으로 표현하기
- 법적 규정과 가해자 처벌 기준에 대해 안내하여 피해 청소년을 안심시킬 수 있도록 함
  - 본 매뉴얼 ‘가정폭력 발생(우려) 시 폭력행위자 처벌·성행 교정을 위한 법적 개입 절차’를 참고하여 안내

#### 1단계 피해청소년 발견

- 가정폭력 유형별 징후 인지하기
- 피해청소년 및 보호자를 관찰·면담하여 가정폭력 피해 가능성 파악하기
- 피해 청소년 발견시 위험상황으로부터 빠르게 조치하기

#### 2단계 가정폭력 신고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신고하기
  - 아동학대 신고 및 상담 ☎1577-1391      - 보건복지콜센터 ☎129
  - 안전신고센터 ☎119                              - 경찰 ☎112
- 가정폭력 의심내용, 피해청소년 및 폭력 방위 의심사·신고자 정보 전달하기
  - 피해청소년 : 이름, 성별, (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소속 교육기관, 학대의심내용 등
  - 폭력행위 의심사 : 이름, 성별, (추정)나이, 전화번호, 주소, 피해아동과의 관계, 직업/직장 등
  - 신고자 : 이름, 전화번호, 피해아동과의 관계, 학대사실을 알게 된 경위 등
- 피해청소년을 안정시키고, 피해청소년의 잘못이 아님을 확인시키기

#### 3단계 협력 및 지원

- 지속적인 정보 제공 및 협조  
신고자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 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아동복지법 제25조3항)  
아동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신고자의 정보는 안전하게 보호됨

그림 출처: 중앙아보전 돌봄시설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사례집

### 🔒 신고를 거부하는 청소년 개입 TIP

- 가정폭력 피해 경험 자체가 피해 청소년에게 힘들고 혼란스러운 상황이므로 피해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상태가 불안정 하다면 정서적 안정화를 돕기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안정화 TIP 참조)
- 피해 청소년에게 강제적으로 신고여부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도록 하기
- 신고시, 피해 청소년이 염려하는 상황에 대해서 충분히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경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상담방법, 경청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부록 참조]

### 🔒 신고를 거부하는 청소년 개입 TIP

- 신고 이후 법적 처리 절차에 대해 자세하게 안내하고 설명하기
- 신고 이후 보복에 대한 두려움, 향후 거취 문제 등 내담자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 경청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모색하기
- 피해 청소년이 현재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도움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기관과 협력하기

## (2) 신고 후 경찰과 협업

가정폭력 사례를 신고 후, 센터는 경찰과 협업을 하게 된다. 아동청소년담당경찰이 접수 후 센터와 협업 과정은 다음과 같다.



## 가정폭력 신고관련

### Q&A

1. 신고하면 어떤 경찰관이 출동하나요?
  - 즉시출동 : 지구대경찰
  - 시간여유가 있다면 : '경찰서'의 '사복전담형사' 요청
- 2 신고했음을 학대행위자/가족에게 고지해도 되나요?
  - 불필요하며 부적절함 \* 진술 오염 우려 : 거짓 진술을 준비할 시간 제공
  - 신고자가 스스로 신분 노출하지 않기
3. 가정폭력 조사와 판결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
  - 조사/확인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의 역할
  - 최종판정 : 경찰/검찰 수사, 법정 신고에 달려 있음
4. 신고자 신변안전은 어떻게 보장되나요?
  - 명백한 학대 선언, 범인 지목 필요 없음
  - 명백한 진술이 없다면 가해자는 미상으로 신고 가능
  - 개인적 보복에 대한 우려 : 신변보장 신청 가능, 112로 신고하여 처벌 가능 (공익신고자 보호법, 아동학대처벌법)
5. 신고 후에 청소년을 데리고 있어야 할까요?
  - 폭력 상황이 의심스러운 경우 : 신속한 신고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
  - 심각한 위해가 우려된다면 :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하기까지 청소년을 보호하고 있을 것을 권유
6. 아동보호전문기관에는 어떤 협조가 필요한가요?
  -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제공 : 증언, 가족관계, 의심되는 가해자 등
  - 피해 청소년의 보호 : 가능하다면 경찰이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출동할 때까지 아동을 보호
7. 학대행위자는 무조건 처벌을 받나요?
  - 정도나 법률 위반 수준에 따라 아동학대 처벌 또는, 상담/교육 대상이 될 수도 있음
  - 아동학대범죄 모두가 처벌이 되지 않을 수 있음
8. 아동학대(가정폭력) 신고사례에 대해 언론인터뷰 요청이 오면 응해도 되나요?
  - 피해청소년의 개인정보 및 신고인의 신분을 알 수 있는 내용 보도는 위법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3항, 제35조)
  - 언론보도로 신고자, 피해자 2차 피해 가능

출처: 중앙아동보호  
전문기관, 2019

### 3) 긴급구조

만약 센터에 발견·접수된 청소년의 가정폭력 피해가 긴급하거나 고위기로 즉각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구조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가정폭력 접수 단계에서 수집한 각종 정보와 위기 스크리닝 척도, 아동용 외상 증상 평가척도,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 척도 등 척도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위기 수준 및 긴급도를 파악하고 이에 따라 긴급 구조 여부를 결정한다.

#### 긴급구조(즉각적인 위기개입)가 필요한 사례

- 신고 된 성학대 사건 중 피해(의심)청소년이 가정폭력행위(의심)자와 동거하는 경우
- 피해(의심)청소년의 신체 상처가 심각하거나 정신적으로 불안하여 긴급치료가 필요한 경우
- 보호자인 가정폭력행위(의심)자가 약물 중독 또는 정신이상으로 청소년을 학대한 경우
- 피해(의심)청소년이 유기 또는 방임되어 피해(의심)청소년의 안전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 피해(의심)청소년이 보호자의 지속적인 학대행위로 집을 나와 귀가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 가정폭력행위(의심)자가 청소년에게 심한 해를 끼칠 것 같다고 스스로 연락한 경우
- 12시간 이내에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 가출 등의 사유로 집에 돌아갈 수 없고 당장 숙식제공을 해야 하는 경우
- 심한 학대를 당하여 신체 심리적 기능이 많이 손상되어 긴급하게 지원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
- 기타 접수 면접자의 판단이나 청소년의 절박한 요청에 의해 긴급한 지원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및 보건복지부(2019), 아동보호전문기관 업무수행지침 참조

#### 유의사항

- 안전한 장소에서 2인 1조 출동하여 상담을 진행한다.
- 출발 전 센터에 내담자와의 상담내용, 출동 장소 등을 보고한다.
- 가급적 폭력행위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한다.
- 피해자나 가족에게 개인 명함 대신 기관명함을 사용하고 상담자 개인 신상은 노출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 현장에 출동한 상담자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연락하여 처리한다.
- 가정폭력이 현재 진행 중이라면 피해사실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관할 지구대에 업무협조 요청을 하여 함께 현장으로 나간다.
- 위기상황에 있는 청소년의 안전을 가장 먼저 고려한다.

- 폭력상황은 예측할 수 없는 위험요인(가해자의 음주 약물 사용, 도구 사용 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피해자 및 가해자와 그 밖의 사람들이 희생되거나 신체적, 심리적 상처를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 폭력사건이 발생한 이후 구조요청을 한 경우 폭력피해의 흔적을 증거로 확보하기 위하여 카메라 등을 지참하도록 한다
- 신체적 고통 치료 및 정신적 충격에 대한 안정 조치에 대한 여부를 확인한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및 여성가족부(2014),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매뉴얼 2권 참조

#### 4) 욕구분석

상담자는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문제유형 및 개별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상담 등 상담 및 정서적 지원으로 내담자를 도울 수 있을지 추가적인 상담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내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할 것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최초 상담자가 지속적으로 개입을 할 것인지 다른 상담자를 연계할 것인지 결정한다. 가정폭력 피해청소년이 서비스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관계를 형성하고 심리적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상담자와 연결하여 적절한 상담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 피해 청소년 요구 파악을 위한 TIP

- 제도화되어 있는 지원시스템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 제공하기(법률지원, 의료기관 정보 제공, 타 전문기관 연계 등) [부록 참조]
- 피해 청소년의 요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상담자의 판단보다 내담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 전문기관 연계 과정에서 피해 청소년이 주저할 경우, 그 이유를 충분히 고려하기
- 피해 청소년이 '원하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와 그 이유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기

#### 피해 청소년이 욕구 파악 사례

▶ 상담자는 상담개입을 통해 모로부터 지속적으로 언어폭력을 당하는 청소년A의 욕구를 파악하였다. A는 모를 가정폭력 가해자로 신고하여 처벌 보다는 상담을 받으면서 모의 언어폭력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언어폭력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받고 싶다고 이야기 하였다. 이에 상담자는 피해 청소년의 욕구를 반영하여 A뿐만 아니라 모가 부모 교육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 5) 상담복지 서비스 제공

### (1) 상담 및 정서적 지원

위기상황에 처해있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정서적 지지를 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있는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다.

- 개인상담
- 집단상담
- 심리검사
- 심리교육
- 가족상담
- 표현예술치료
- 전화상담
- 모바일상담
- 사이버상담
- 기타

### (2) 사회적 보호

가출하여 귀가하지 않고 있거나 위험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사회적 보호를 통해 청소년들을 긴급한 위험상황으로부터 보호함과 동시에 안식처를 제공함으로써 더 큰 위험 상황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다.

- 긴급개입 : 청소년을 현장에 찾아가서 긴급하게 구조한 경우 관리하는 사례에 대해 긴급하게 구조하거나 출동하여 위기 개입하는 서비스
- 긴급구조 : 초기에 위기청소년을 발견하여 구조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
- 일시보호 : 내부 혹은 외부 기관과 연계하여 일시보호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 단기보호 : 가정에 머무르기 어려운 청소년을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머무를 수 있도록 개입한 경우이다.
- 장기보호 : 가정에 머무르기 어려운 청소년을 외부기관과 연계하여 중장기 쉼터 및 보육기관 혹은 입양절차를 통해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있도록 개입한 경우이다.
- 가출청소년 선도 교육
- 후원자 연결
- 기타

### ☑ 유의사항

상담 초기에 내담자들은 자신이 가족의 약점을 타인에게 노출시켰다는 비난을 받거나 가해자인 가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상담자가 내담자의 지지자라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내담자 본인의 의지만큼 도와 줄 수 있음을 알리는 작업이 이루어지는 초기상담이 중요하다.

- 방임·폭언·폭력 등 여러가지 유형의 가정폭력이 중복 발생하기 쉽고 가족이 가해자이자 보호자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폭력 피해자 대상의 초기상담은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한다.
- 지속적인 방임은 신체학대만큼 치명적일 수 있으므로 가볍게 다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특히 피해청소년의 나이가 어릴수록 더욱 주의 깊게 확인해야 한다.
- 상담자가 가정폭력 행위자가 동일한 성(性) 일 경우 가해자로서의 이미지가 강하므로 가정폭력 행위자와 다른 성의 상담자를 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상담 시 가해자를 법적으로 처벌하기를 원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나 상담자가 법적 처벌을 종용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내담자가 가해자의 법적 처벌을 원하는 지와 상관 없이 상담자는 내담자의 편이라는 신뢰감과 믿음을 줌으로써 내담자를 지지해야 한다.
- 피해청소년의 안전과 심리적 치유 등이 중요하므로 피해청소년의 욕구가 무엇인가가 상담의 중심에 놓여져야 한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참조

### ☑ 일시보호 시 유의 사항

- 위기청소년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고 까다로운 절차없이 입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습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보호소 입소규칙을 만들 때, 입소를 몇 회 이하로 정하는 등 원칙을 명시하고 이를 일시보호소를 이용하는 위기청소년에게 주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 일시보호소는 다양한 위험에 노출된 위기청소년들을 일시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함과 동시에 보호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의 일시보호소를 경험하게 함으로써 보호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일시보호소 입소기간이 길어질 경우보호시설 입소를 꺼리는 등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입소기간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면 쉼터로 연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 내담자에게 적합한 보호시설을 알아보는 데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거나 성별 및 전염성의 우려가 있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호시설의 입소가 꺼려지는 위기청소년의 경우 보호기간을 유동적으로 결정한다.
- 일시보호소는 청소년의 심신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수일 이상 지내는 청소년은 쉼터로 연계할 준비를 하도록 한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참조

### ☑ 보호시설 연계 시 유의사항

-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청소년이 청소년전화1388을 통해 발견되었을 경우
- 심야시간 전화로 접수된 청소년을 의뢰할 경우, 우선 상담자의 소속기관과 내담자에 대한



정확한 인적 정보를 알려준다. 특히 심야시간 청소년보호시설의 경우 시설 실무자보다는 생활지도사가 근무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근무자가 1인일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여 1388청소년지원단이나 경찰 등이 내담자와 동행하여 보호시설로 입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 내담자가 보호시설까지 잘 도착하였는지 반드시 최종 확인해야 하며 내담자가 이용한 교통비는 위기지원팀(긴급구조팀)에서 부담할 수 있다.
- 이때 보호시설에서 내담자의 초기 상담기록지와 교통비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위기지원팀(긴급구조팀)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
- 보호시설 입소가 필요한 청소년이 센터에 직접 방문했을 경우
- 상담을 통하여 내담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긴급구조).
- 보호시설의 개별특성이 상이하므로 보호시설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위기청소년에게 가장 적합한 시설을 선택해야 한다. ‘지역자원 현황’ 등을 사전에 작성해준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참조

### (3) 기초생활 및 경제적 지원

가정의 돌봄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거나 자활의 의지를 가지고 학업이나 취업교육 등을 장기간 받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의미한다. 기초생활 및 경제지원을 통해 한 인간으로서의 기초생활유지와 아울러 자활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수급신청
- 식사제공
- 세탁 및 샤워 제공
- 의복 지원
- 생활비 지원
- 양육비 지원
- 후견인제도
- 기타

### (4) 교육·학업지원

학업을 중단하였거나 정규교육과정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교육 및 학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육 및 학업지원을 통해 청소년 시기에 필요한 기본적인 교육 및 학업능력을 지니도록 도와줌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기본자질을 갖추도록 돕는다.

- 교육비 지원
- 검정고시 과목 교육
- 검정고시 응시 지원대안 교육 연계 지원
- 특기 적성교육 및 방과 후 학습지원
- 기타

## (5) 의료지원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 각종 폭력에 노출되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거나, 장기간의 가출과 노숙생활로 인해 건강상태가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의미한다. 의료지원을 통해 기본적인 신체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으며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감과 갈등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되찾아 다시 생활로 복귀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줄 수 있다.

- 건강진단
- 약품지원
- 치료지원(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신과, 기타)
- 보건의료 교육
- 약물남용 예방 캠페인 및 교육
- 기타

### ☑ 유의사항

- 경우에 따라 피해자나 가해자를 병원이나 정신과병원, 약물중독치료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의뢰한 서비스들이 적절히 제공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피해자와 가족의 반응을 확인한다.
- 가정폭력 피해청소년에게 심리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은 필수적이다.
- 실시할 수 있는 심리검사에는 PAI-A, MMPI-A, Rorschach, SCT(문장완성 검사), KFD(그림검사), K-WAIS(만 16세 이상 지능검사), K-WISC(아동용지능검사), K-CBCL, SCL-90-R 등이 있다.
- 시설입소 청소년에 대한 의료지원의 경우 의료비만 지원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때 의료지원비 영수증, 담당의사 진료소견서 등을 받도록 한다.
- 가정폭력의 유형, 가해자의 성별 등에 따라서 청소년이 특정 성별의 의사에게 진료 받는 것을 꺼려할 수 있다. 지역 내 병원과 네트워크를 형성할 때 의사의 성비를 고려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참조

## (6) 자활(자립)지원

장기간 가출을 하였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비행문제를 일으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 자활하고자 하는 청소년들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활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과 재활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고 가출, 비행 등 문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 직업훈련(자활 훈련)
- 아르바이트 및 취업 지원
- 직업정보, 취업정보 제공
- 기타

### (7)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

가정폭력, 학교폭력, 성폭력 피해 및 가해청소년, 범법행위로 인한 법적처벌 대상 청소년, 고용주로부터 착취를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률자문 및 권리구제 지원을 통해 부당한 대우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정당한 권리를 합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 법률 자문 : 법률 정보 및 자문을 받도록 지원
- 변호지원 : 변호 지원 및 합의 중재를 받도록 지원
- 조사 동행      ● 소견서 지원      ● 기타

### (8)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가정내 갈등, 경제적 어려움, 음주, 흡연, 약물중독 및 게임중독, 자살 자해(위기) 등 다양한 이유로 파괴적이고 불건전한 여가 활동에 노출된 청소년에게 건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의미한다.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위기 문제들을 해결하고 건강한 대안활동을 통해 건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하도록 도울 수 있다.

- 수련/문화활동 지원
- 동아리 활동지원
- 자원봉사 활동지원
- 기타

### (9) 기관 연계

피해청소년과 가정폭력행위자 및 가족의 욕구 및 필요에 따라 지역사회의 다양한 서비스 기관과 연계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용 가능한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도록 하며, 필요시 운영위원회, 실행위원회 등을 적극 개최하도록 한다.

#### ☑ 유의사항

- 가정폭력의 주기적 특성과 폭력 재발위험을 고려할 때 추후지도를 보장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전문가와 교류를 갖도록 한다.
- 대부분의 기관들은 심야시간 상담을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즉시개입이 필요한 경우 긴급구조하여 일시보호소를 이용한 후 연계한다.
- 기관연계시 해당기관의 담당자에게 내담자의 인적사항 및 주호소문제 등을 최대한 자세히 알려주고, 내담자가 해당기관으로 방문 혹은 전화상담 등을 받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출처: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2018), 위기개입 5판 참조

### ① 아동보호전문기관

지방자치단체는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두어야 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현 아동권리보장원)

- 아동학대 관련 정책 제언
- 유관기관과의 업무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관련 연구 및 종사자 직무교육 실시
-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운영관리 등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
-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
-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학대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

### ② 학대피해아동쉼터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대표적인 아동복지시설로서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이 분리 보호 조치한 학대피해아동에 한하여 입소하는 특수 공동생활가정이다.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한다.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및 생활 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심리치료, 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 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학대피해아동쉼터 외에도 가정폭력 피해청소년이 이용 가능한 아동복지시설로는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지역아동센터 등이 있다.

### ③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복지시설로서 가출(징후) 청소년의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 및 비행 예방, 생활보호(의식주)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을 지원한다.

청소년쉼터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 가출청소년의 일시보호 및 숙식제공

- 가출청소년의 상담 선도 수련활동
- 가출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활동
- 가출청소년의 사례관리
- 청소년의 가출예방을 위한 거리상담
- 그밖에 청소년복지 지원에 관한 활동

#### ④ 청소년자립지원관

일정기간 청소년 쉼터 등의 지원을 받았는데도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한다.

청소년자립지원관의 주요 업무는 자립준비청소년이 안정적으로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당 시설의 자원, 지역 공공서비스 및 민간자원 등을 활용하여 일상생활, 학업, 취업 지원 및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 ⑤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기능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된다.

- **청소년형** : 19세 미만 성폭력피해아동 청소년과 지적장애인에 대하여 의료지원, 심리평가 및 치료, 법률지원, 지지체계로서의 가족기능강화를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
- **위기지원형**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담 및 의료지원, 수사 법률지원
- **통합형** : 위기지원형과 청소년형을 통합

#### ⑥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피해자 긴급구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로서 센터 내에 피해자 긴급보호를 위한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다. 긴급피난처는 3일 이내의 보호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7일까지 연장 가능하다.

여성긴급전화1366은 가정폭력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발굴된 청소년에게도 가정폭력 피해의심이 있는 경우 경찰,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신고하여 지역상담소,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연계조치하는 등의 개입을 하고 있다.

### ⑦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학대의 경우는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과 같이 성폭력범죄에 특화된 유관기관의 협력을 구할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는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입소 대상자에 따라 일반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 특별지원 보호시설(19세 미만 피해자), 외국인보호시설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성폭력상담소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성폭력상담소

- 성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성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또는 사회생활이 곤란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긴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과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등을 연계
- 피해자의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하여 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의료지원
- 피해자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 등 동행
- 성폭력행위자에 대한 고소와 피해배상청구 등 사법처리 절차에 관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 기관에 필요한 협조 및 지원 요청
- 성폭력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 그 밖에 성폭력 및 성폭력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 ●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성폭력피해자를 일시보호하는 일
- 성폭력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 및 가정복귀를 돕는 일
- 수사기관의 조사 및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시행과 취업정보의 제공

### ⑧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상담소는 가정폭력의 예방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하여 설치 운영되고 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은 입소 기간, 입소 대상자에 따라 단기보호시설, 장기보호시설, 외국인보호시설, 장애인보호시설로 나눌 수 있다.

가정폭력상담소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 가정폭력상담소

- 가정폭력피해를 신고 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기타 긴급히 보호가 필요한 피해자에 대해 임시보호를 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 피해자보호시설 인도
-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나 지방 변호사회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의 임시보호
- 가정폭력의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조사 연구
- 지역사회에 대하여 캠페인, 지역신문, 생활정보지, CATV, 반사회보 등을 활용하여 홍보활동 시행

####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⑨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한 범죄 피해자 및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및 무료소송, 대리소송 등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제공하는 무료법률구조제도의 내용으로는

-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지원
- 민사 가사소송 사건을 청구 등이 있다.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된 ‘법률홈닥터’ 제도를 통해서도 기본적인 법률상담을 무료로 제공 받을 수 있다.

## 2.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sup>2)</sup>

### 1) 접수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찰 등에서 발굴된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 중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를 동의했거나, 전문적인 상담 및 정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의 경우가 이에 속한다.

유관기관과 피해 청소년 사례를 공유할 때는 「서비스 연계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여 절차를 진행하도록 한다.

이전 기관에서 제공한 피해 청소년 관련 정보와 위기 스크리닝 척도 등 척도 평정 결과를 종합하여 상담자를 배정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 유관기관에서 센터로 연계시 확인해야할 사항

- 연계기관에서 제공한 서비스
  - 임시거주 지원  법적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기타
- 연계 대상자의 현재 상황
  - 가정박  학교박  자살·자해  기타
- 연계 대상자가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 현재 연계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
  - 임시거주 지원  법적지원  삭제지원  의료지원  상담지원  기타
- 본 기관에 연계하고자 하는 이유

### 2) 욕구분석 및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청소년이 이전 기관에서 받았던 서비스를 확인하고 지금 현재 청소년에게 필요한 상담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상황에 따라서는 유관기관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욕구에 기민하게 반응하도록 노력한다.

2) <서식> 서비스 연계 동의서 참조



## 타기관 연계로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①

▶ 형제인 청소년 A와 B는 도벽문제로 경찰서 사랑의 교실에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연계되었다. 상담자는 경찰서로부터 받은 상담신청서 및 청소년 접수면접을 통해 형제가 부-자 가정에서 부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함께 가출을 하였고 등교거부 부터 도벽문제 까지 이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상담자는 경찰서를 통해 부와 연락하여, 경제적 어려움 및 자녀양육 스트레스로 심리적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부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내 부모상담과 지역사회복지관의 경제적지원방안을 연계하였다.

(1) 상담 및 정서적지원<sup>3)</sup>

장기간 가출을 하였거나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 비행문제를 일으켜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받고 자활하고자 하는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서비스를 의미한다. 자활지원을 통해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의욕과 재활에 대한 동기를 높여줄 수 있고 가출, 비행 등 문제 행동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다.

- 직업훈련(자활 훈련)
- 아르바이트 및 취업 지원
- 직업정보, 취업정보 제공
- 기타(부모상담 등)

## 타기관 연계로 상담복지서비스 제공 사례 ②

▶ 고등학교 3학년인 청소년A는 가정폭력피해로 가출 후 청소년중장기쉼터를 이용 중이다. 쉼터 선생님의 권유로 지역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A는 심리상담보다는 당장 자립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검정고시나 취업준비 등에 대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집중적으로 받고 싶다고 요청하였다. 후기청소년인 피해 청소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꿈드림 지원센터에서 진로상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하였다.

3) 피해 청소년의 정서적 지원을 돕기위해서 상담자는 무엇보다 내담자가 호소하는 어려움에 대해 주의깊게 경청하고 공감해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부록> '경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상담방법', '경청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를 참조할 수 있다.

가정폭력 피해 청소년의 피해상황과 욕구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상담개입을 하는 경우, 상담자는 목표설정하기 → 상담관계형성하기 → 부정적감정 및 생각다루기 → 평가하기 등 상담구조화를 명확히 해야 한다.

✔ **상담과정 중 청소년상담사가 주의해야할 태도**

- 가정폭력 피해사실에 대한 청소년의 책임여부 판단(문제행동, 비행에 대한 책임)
- ‘모든 것이 괜찮다’, ‘아무것도 아니다’ 식의 막연한 위로와 공감
- 학대행위자에 대한 부분별한 분노·비난
- 가정폭력 피해 상황에 대한 세부내용을 물어보거나 수사하듯 질문하기
- 이전 연계관과 같은 내용을 여러번 반복하여 진술하도록 권유하기
- 청소년의 요구와 상관없이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하기



## 부 록

1.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관련 법령
2.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3. 경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상담방법
4. 경청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
5. 청소년상담자의 감수성 및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6.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
7. 청소년상담자 보호 및 소진 방지
8.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부록 1]

##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관련 법률

### 1)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의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기본이념) 가정폭력 피해자는 피해 상황에서 신속하게 벗어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안전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
2.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4호의 자를 말한다.
3. “피해자”란 가정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
4.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이 아닌 국민에게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의6(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긴급전화센터를 따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신고접수 및 상담
  2. 관련 기관·시설과의 연계
  3. 피해자에 대한 긴급한 구조의 지원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 및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임시 보호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8.>
-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긴급전화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 1의2. 가정폭력을 신고하거나 이에 관한 상담을 요청한 사람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2. 가정폭력으로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렵거나 그 밖에 긴급히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을 임시로 보호하거나 의료기관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 시설로 인도(引渡)하는 일
3.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하여 자문하기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또는 지방변호사회 및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 구조법인(이하 “법률구조법인”이라 한다) 등에 대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4. 경찰관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들의 임시 보호
5.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가정폭력과 그 피해에 관한 조사·연구

제7조(보호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2(보호시설의 종류) ① 보호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6. 9.>

1. 단기보호시설 : 피해자들을 6개월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2. 장기보호시설 : 피해자들에 대하여 2년의 범위에서 자립을 위한 주거편의(住居便宜) 등을 제공하는 시설
  3. 외국인보호시설 : 외국인 피해자들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4. 장애인보호시설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인 피해자들을 2년의 범위에서 보호하는 시설
- ② 단기보호시설의 장은 그 단기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기간을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3개월의 범위에서 두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의3(보호시설의 입소대상 등) ① 보호시설의 입소대상은 피해자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가정폭력행위자가 아닌 보호자가 입소에 동의하는 경우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이거나 정신장애인, 그 밖에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자로서 상담원의 상담 결과 입소가 필요하나 보호자의 입소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7조제2항에 따라 인가받은 보호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에 입소한 입소자의 인적사항 및 입소 사유 등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입소시킨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보호시설의 업무) ① 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피해자가 동반한 가정 구성원에게는 제1호 외의 업무 일부를 하지 아니할 수 있고, 장기보호시설은 피해자등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업무(주거편의를 제공하는 업무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숙식의 제공
  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4. 수사·재판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
  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
  8. 그 밖에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일
- ② 장애인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할 때에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4(사법경찰관리의 현장출동 등) ①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가정폭력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된 현장 또는 사건 조사를 위한 관련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 ③ 가정폭력행위자는 제2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현장 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④ 제2항에 따라 출입,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수사기관의 장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에게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소속 상담원을 가정폭력 현장에 동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⑥ 제2항에 따라 조사 또는 질문을 하는 사법경찰관리는 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이 자유롭게 진술할 수 있도록 가정폭력행위자로부터 분리된 곳에서 조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 엄수의 의무)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기피하는 등 업무 수행을 방해한 가정폭력행위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가정폭력범죄의 형사처벌 절차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로 파괴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을 가꾸며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2. “가정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 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나.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다.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嫡母)와 서자(庶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라. 동거하는 친족
3. “가정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제258조의2(특수상해), 제260조(폭행, 존속폭행)제1항·제2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4조(상습범)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 존속유기)제1항·제2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 존속학대) 및 제274조(아동혹사)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제277조(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79조(상습범) 및 제280조(미수범)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 존속협박)제1항·제2항,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의 죄에만 해당한다)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5조

-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제305조의2(상습범)(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의 죄에 한한다)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 등)의 죄
- 카. 가목부터 차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4. “가정폭력행위자”란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사람 및 가정구성원인 공범을 말한다.
  5. “피해자”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6. “가정보호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7. “보호처분”이란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심리를 거쳐 가정폭력행위자에게 하는 제 40조에 따른 처분을 말한다.
  - 7의2. “피해자보호명령사건”이란 가정폭력범죄로 인하여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4조(신고의무 등) ① 누구든지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2. 아동, 60세 이상의 노인, 그 밖에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결여된 사람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종사자와 그 기관장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전문인력과 그 장
  5.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결혼중개업자와 그 종사자
  6. 「소방기본법」에 따른 구조대·구급대의 대원
  7.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8.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종사자와 그 센터의 장
- ③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상담소,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보호시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피해 상담소 및 보호시설(이하 "상담소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과의 상담을 통하여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가정폭력범죄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그 신고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피해자의 분리 및 범죄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제6조(고소에 관한 특례)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가정폭력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가정폭력행위자인 경우 또는 가정폭력행위자와 공동으로 가정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자는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자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법경찰관의 사건 송치) 사법경찰관은 가정폭력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8조(임시조치의 청구 등)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1호·제2호 또는 제3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제1항의 청구에 의하여 결정된 임시조치를 위반하여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제2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그 사유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5조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 또는 피해

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의3(긴급임시조치와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8조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신청받은 검사는 법원에 임시조치를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조치의 청구는 긴급임시조치를 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가정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가정폭력범죄로서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등을 고려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정폭력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9조의2(상담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가정폭력사건을 수사한 결과 가정폭력행위자의 성행 교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당조건부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제11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9조에 따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이하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 ② 검사는 가정폭력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12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이 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가정보호사건의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원은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7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가정보호사건에 대한 제37조제1항의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제1호의 사유에 따른 결정만 해당한다)이 확정된 때
  2. 해당 가정보호사건이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라 송치된 때
- ②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1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18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가정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상담소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4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동행영장에 의하여 동행한 가정폭력행위자 또는 제13조에 따라 인도된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는 가정폭력행위자가 법원에 인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의 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와 피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④ 법원은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가정폭력행위자의 보조인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가정폭력행위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변호사 등 보조인을 선임할 수 있으며 제49조제1항의 항고를 제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의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4호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가정폭력행위자를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⑦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6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⑧ 판사는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임시조치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가정보호사건조사관, 법원공무원, 사법경찰관리 또는 구치소 소속 교정직공무원으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
- ⑨ 가정폭력행위자, 그 법정대리인이나 보조인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⑩ 판사는 직권으로 또는 제9항에 따른 신청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해당 임시조치를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⑪ 제1항제4호의 위탁의 대상이 되는 의료기관 및 요양소의 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40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다.

1.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가정폭력행위자가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가정폭력행위자가 친권자인 경우 피해자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併科)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적당한 시설로 인도할 수 있다.
  - ④ 법원은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가정폭력행위자, 피해자,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또는 상담소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민간에 의하여 운영되는 기관인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가정폭력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⑥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가정폭력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5조의2(피해자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자인 가정폭력행위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 ② 제1항 각 호의 피해자보호명령은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③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④ 판사는 직권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해당 피해자보호명령을 취소하거나 그 종류를 변경할 수 있다.
- ⑤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일정 기간 동안 검사에게 피해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해자의 주거지 또는 현재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신변안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가정폭력행위자를 상대방 당사자로 하는 가정보호사건, 피해자보호명령사건 및 그 밖의 가사소송절차에 참석하기 위하여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2.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하는 피해자에 대한 신변안전조치
  - 3. 그 밖에 피해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 ⑥ 제5항에 따른 신변안전조치의 집행방법, 기간,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임시보호명령) ① 판사는 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5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자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임시보호명령의 취소 또는 그 종류의 변경에 대하여는 제55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자보호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4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변호사는 제외한다), 상담소등의 상담원 또는 그 기관장(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24조제1항에 따른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44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법원이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제9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가정보호사건으로서 제40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제66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가정폭력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검사가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는 제외한다)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절차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3. “아동학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를 말한다.
4. “아동학대범죄”란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중 제257조(상해)제1항·제3항, 제258조의2(특수상해)제1항(제257조제1항의 죄에만 해당한다)·제3항(제1항 중 제257조제1항의 죄에

- 만 해당한다), 제260조(폭행)제1항, 제261조(특수폭행) 및 제262조(폭행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나. 「형법」 제2편제28장 유기와 학대의 죄 중 제271조(유기)제1항, 제272조(영아유기), 제273조(학대)제1항, 제274조(아동학대) 및 제275조(유기등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다. 「형법」 제2편제29장 체포와 감금의 죄 중 제276조(체포, 감금)제1항, 제277조(중체포, 중감금)제1항, 제278조(특수체포, 특수감금), 제280조(미수범) 및 제281조(체포·감금등의 치사상)(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만 해당한다)의 죄
  - 라. 「형법」 제2편제30장 협박의 죄 중 제283조(협박)제1항, 제284조(특수협박) 및 제286조(미수범)의 죄
  - 마.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 약취, 유인), 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제289조(인신매매) 및 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치상)의 죄
  - 바.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 사. 「형법」 제2편제33장 명예에 관한 죄 중 제307조(명예훼손), 제309조(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제311조(모욕)의 죄
  - 아. 「형법」 제2편제36장 주거침입의 죄 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
  - 자. 「형법」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강요) 및 제324조의5(미수범)(제324조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차. 「형법」 제2편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 중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및 제352조(미수범)(제350조, 제350조의2의 죄에만 해당한다)의 죄
  - 카. 「형법」 제2편제42장 손괴의 죄 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
  - 타. 「아동복지법」 제71조제1항 각 호의 죄(제3호의 죄는 제외한다)
  - 파. 가목부터 타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하. 제4조(아동학대치사), 제5조(아동학대중상해) 및 제6조(상습범)의 죄
- 4의2.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이란 아동학대범죄에 관한 신고·진정·고소·고발 등 수사 단서의 제공, 진술 또는 증언이나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및 범인검거를 위한 제보 또는 검거활동을 말한다.
- 4의3.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이란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한 자를 말한다.
5. “아동학대행위자”란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사람 및 그 공범을 말한다.
  6.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7. “아동보호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호처분(이하 “보호처분”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8.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이란 아동학대범죄로 인하여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대상이 되는 사건을 말한다.

9.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말한다.
- 9의2. “가정위탁지원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를 말한다.
10. “아동복지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11.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동의 상담·지도·치료·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9조(친권상실청구 등) ① 아동학대행위자가 제5조 또는 제6조의 범죄를 저지른 때에는 검사는 그 사건의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친권자나 후견인인 경우에 법원에 「민법」 제924조의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같은 법 제940조의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친권상실의 선고 또는 후견인의 변경 심판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요청받은 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처리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처리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직접 법원에 제1항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제10조(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 및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 아동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는 제외한다)
3. 「아동복지법」 제13조에 따른 아동복지전담공무원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5.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의 장과 그 종사자
  9.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10.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119구급대의 대원
  1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등에 종사하는 응급구조사
  12. 「영유아보육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및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등 보육교직원
  1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장과 그 종사자
  14.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15.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과 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1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로서 시설에서 장애아동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정신요양시설 및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정신재활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18.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시설 및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
  19.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재활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20.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과 그 종사자
  2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22.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강사·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직원
  23.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
  24.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지원 수행인력
  25. 「입양특례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2(불이익조치의 금지)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아동학대범죄신고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의3(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 대하여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의4(고소에 대한 특례) ①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아동학대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다.

피해아동의 법정대리인이 아동학대행위자인 경우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와 공동으로 아동학대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아동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다.

② 피해아동은 「형사소송법」 제224조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인 경우에도 고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고소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피해아동에게 고소할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이 신청하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출동) ①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복지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은 지체 없이 아동학대범죄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서로 동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수사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아동학대범죄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② 아동학대범죄 신고를 접수한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아동학대범죄가 행하여지고 있는 것으로 신고된 현장에 출입하여 아동 또는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할 수 있다. 다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다음 각 호를 위한 범위에서만 아동학대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 또는 질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피해아동의 보호

2. 「아동복지법」 제22조의4의 사례관리계획에 따른 사례관리(이하 "사례관리"라 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출동 시 아동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동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피해아동의 보호 및 사례관리를 위한 범위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신설 2020. 3. 24.>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이나 조사를 하는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누구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제12조(피해아동 등에 대한 응급조치)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현장에 출동하거나 아동학대범죄 현장을 발견한 경우 또는 학대현장 이외의 장소에서 학대피해가 확인되고 재학대의 위험이 급박·현저한 경우,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형제자매인 아동 및 피해아동과 동거하는 아동(이하 “피해아동등”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즉시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응급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의 조치를 하는 때에는 피해아동등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피해아동등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

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해아동등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1. 아동학대범죄 행위의 제지
2.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 등으로부터 격리
3. 피해아동등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설로 인도
4.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 인도

② 사법경찰관리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라 피해아동등을 분리·인도하여 보호하는 경우 지체 없이 피해아동 등을 인도받은 보호시설·의료시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는 72시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검사가 제15조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한 경우에는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 시까지 연장된다.

④ 사법경찰관리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속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를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⑤ 제4항에 따른 응급조치결과보고서에는 피해사실의 요지, 응급조치가 필요한 사유, 응급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폭행·협박이나 응급조치를 저지하는 등 그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3. 24.>

[제목개정 2020. 3. 24.]

제13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긴급임시조치) ① 사법경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여 제19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아동학대행위자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변호사(제16조에 따른 변호사를 말한다. 제48조 및 제49조를 제외하고는 이하 같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이하 “긴급임시조치”라 한다)를 한 경우에는 즉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 내용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③ 제2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결정서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긴급임시조치가 필요한 사유, 긴급임시조치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4조(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사법경찰관리나 보호관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제19조제1항 각 호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다.

- ②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 또는 그 신청을 요청하거나 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검사 및 임시조치를 요청한 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15조(응급조치·긴급임시조치 후 임시조치의 청구) ① 사법경찰관이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하였거나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졌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제19조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검사는 임시조치를 청구하는 때에는 응급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긴급임시조치가 있었던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항에 따라 작성된 응급조치결과보고서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된 긴급임시조치결정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③ 사법경찰관은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임시조치를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이 임시조치의 결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그 긴급임시조치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피해아동에 대한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형사절차”는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제17조(준용) ① 아동학대범죄의 조사·심리에 관하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 또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피해아동”으로 본다. <개정 2020. 3. 24.>

- ② 아동학대범죄사건의 형사 및 아동보호 절차에서 참고인이나 증인이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6조부터 제39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성폭력범죄”는 “아동학대범죄”로, “피해자”는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본다. <신설 2020. 3. 24.>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판사는 피해아동등에 대하여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임시조치가 청구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임시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④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두 차례만,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시조치는 한 차례만 각 기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⑤ 제1항제6호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 ⑥ 제1항제6호에 따라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 등에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제5항에 따라 부과할 사항을 그 의료기관 등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임시조치를 결정한 경우에는 검사, 피해아동등,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피해아동등을 보호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⑧ 제1항제5호에 따른 상담 및 교육을 행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 등은 그 결과보고서를 판사와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⑨ 제1항 각 호의 위탁 대상이 되는 상담소, 의료기관, 요양시설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제7항에 따른 통지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사법경찰관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수사하여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법경찰관은 해당 사건을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검사의 결정 전 조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 아동보호사건 송치,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아동학대행위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경력, 생활환경, 양육능력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보호관찰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요구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아동학대행위자 또는 관계인에게 조사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그 인권을 존중하며, 직무상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 ④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 대하여 제1항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 ⑤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사 결과 및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등을 참고하여 피해아동 보호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화·개선에 가장 적합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4.>

제26조(조건부 기소유예)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를 수사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상담, 치료 또는 교육 받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할 수 있다.

1.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2. 아동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3.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性行) 및 개선 가능성
4. 원가정보호의 필요성
5. 피해아동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사

제27조(아동보호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아동학대범죄로서 제26조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할 수 있다.

1.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아동학대범죄에서 고소가 없거나 취소된 경우
2.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아동학대범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명시적 의사표시를 하였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8조(검사의 송치) ① 검사는 제27조에 따라 아동보호사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을 제18조제1항에 따른 관할 법원(이하 “관할 법원”이라 한다)에 송치하여야 한다.

② 검사는 아동학대범죄와 그 외의 범죄가 경합(競合)하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건만을 분리하여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29조(법원의 송치)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결과 제36조에 따른 보호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관할 법원에 송치할 수 있다.

제34조(공소시효의 정지와 효력) ① 아동학대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아동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 ②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법원에 송치된 때부터 시효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때부터 진행된다.
  1. 해당 아동보호사건에 대하여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처분을 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이 확정된 때
  2. 해당 아동보호사건이 제41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준용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때
- ③ 공범 중 1명에 대한 제2항의 시효정지는 다른 공범자에게도 효력을 미친다.

제35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① 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6조(보호처분의 결정 등) ① 판사는 심리의 결과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을 할 수 있다.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강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 ②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 ③ 제1항제3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피해아동을 아동학대행위자가 아닌 다른 친권자나 친족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으로 인도할 수 있다.
- ④ 판사가 제1항제3호의 보호처분을 하는 경우 보호처분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사람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⑤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보호처분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검사,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호관찰관 및 보호처분을 위탁받아 하는 보호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상담소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으로부터 수탁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3. 24.>
- ⑥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분을 한 경우에는 법원은 아동학대행위자의 교정에 필요한 참고자료를 보호관찰관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 ⑦ 제1항제6호의 감호위탁기관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 그 성행을 교정하기 위한 교육을 하

여야 한다.

제47조(가정법원의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명령) ① 판사는 직권 또는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②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요청을 신속히 처리해야 하며,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4.>

③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④ 판사가 제1항 각 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 그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관할 법원에 대하여 필요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4.>

⑤ 판사가 제1항제7호 및 제8호의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 3. 24.>

⑥ 제1항제4호·제5호·제5호의2·제6호의 규정에 따른 위탁 대상이 되는 아동복지시설, 의료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상담소 등, 연고자 등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3. 24.>

⑦ 판사는 제1항제5호의2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을 하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아동의 보호자를 그 과정에 참여시킬 수 있다. <신설 2020. 3. 24.>

제52조(피해아동에 대한 임시보호명령) ① 관할 법원의 판사는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임시로 제4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보호명령”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 임시보호명령의 기간은 피해아동보호명령의 결정 시까지로 한다. 다만, 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 ③ 판사가 제47조제1항제7호 및 제8호에 따라 임시보호명령을 한 경우 그 임시보호명령의 기간 동안 임시로 후견인의 임무를 수행할 자의 선임 등에 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 ④ 임시보호명령의 집행 및 취소와 변경에 대하여는 제5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피해아동보호 명령"은 "임시보호명령"으로 본다.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1조(업무수행 등의 방해죄) ① 제11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제36조제1항 각 호 또는 제4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 중인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그 업무수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③ 제1항의 죄를 범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3. 24.>

제62조(비밀엄수 등 의무의 위반죄) ① 제35조제1항에 따른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제10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사람(그 직에 있었던 사람을 포함한다)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보조인인 변호사에 대하여는 「형법」 제317

조제1항을 적용한다.

②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2조의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0. 3. 24.>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지원 유관기관

### 1) 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의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45조). 2020년 9월 기준으로 전국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총 71개소이다.

#### 〈아동보호전문기관 현황〉

(2020. 9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서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66길 19(135-515)	02-558-1391	중앙
	노원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로 331 노원아동복지관 3층	02-974-1391	
	서울동남권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동남로 103, 4층(가락동)	02-474-1391	
	서울특별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광평로34길 124 (06362)	02-2040-4242	
	서울특별시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시 동대문구 답신리로 69길 106	02-2247-1391	
	서울강서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47가길 12 (가양동, 157-200)	02-3665-5183~5	
	서울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로 210 AGM빌딩 4층(응암동) (122-905)	02-3157-1391	
	서울영등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동3가 55-7 에이스테크노타워 4층 407호 (07299)	02-842-0094	
	서울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동소문로3길 36 1층(타운힐빌딩) (136-031)	02-923-5440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신수로 46, 401호 (121-856)	02-422-1391	
부산	부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서구 까치고개로 183 (602-827)	051-791-1391	
	부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동구 자성로141번길 11 삼환오피스텔 1503호(범일동) (48742)	051-791-1360	
	부산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370-1 화명대림타운상가 4층 405,406호(616-786)	051-711-1391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506 영풍리젠시 903호 (48101)	051-715-1391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대구	대구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302(동인동3가) (700-423)	053-422-1391	
	대구광역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25길 12-1 (산격동)	053-710-1391	
	대구광역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319 (송현동) 2층	053-623-1391	
인천	인천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남구 경원대로 899(주안동) (22134)	032-434-1391	
	인천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 904, 4층(간석동) (405-807)	032-424-1391	
	인천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1074, 5층 504, 505호(계산동, 삼환1빌딩)(21050)	032-515-1391	
광주	광주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16 (502-860)	062-385-1391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대자로 97-2(운암동) (61261)	062-675-1391	
대전	대전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중구 어덕마을로 156 (301-840)	042-254-6790	
	대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대전광역시 서구 계백로 1135, 707호	042-716-2020	
울산	울산광역시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3길 21 (681-300)	052-245-9382	
	울산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울산 남구 돌질로 355번길 23(우 44709)	052-256-1391	
세종	세종시아동보호전문기관	세종특별자치시 새롬로 14 새롬종합복지센터 2층	044-864-1393	
경기	경기도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225번길 20 (440-822)	031-245-2448	
	안양아동보호전문기관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19 계양빌딩 7층(안양동)	031-468-9821	
	경기광명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광명시 금하로 526, 4층(14318)	02-897-1577	
	수원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원천로392번길 17 (연무동 189-2)	031-8009-0080	
	경기평택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평택시 소사1길 33 동방평택복지타운(소사동)(450-080)	031-652-1391	
	시흥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시흥시 비둘기공원7길 83(대야동, 2층) (429-874)	031-316-1391	
	경기용인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강남서로9 505호(구갈동) (446-573)	031-275-6177	
	안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예술광장로 35, 402호(월피동, 에스엘타운) (15288)	031-402-0442	
	경기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196 4층(도림빌딩) (480-850)	031-874-9100	
	경기성남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성남대로 1306 2층(태평동) (461-190)	031-756-1391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중앙로557번길 11 삼정프라자 7층 (412-835)	031-966-1391	
	경기부천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부천시 길주로 319(중동 1079-3) 골든타워 3층 302호(14534)	032-662-2580	
	경기화성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삼천병마로 1334, 4층(봉담읍, 송현빌딩)(445-893)	031-227-1310	
	경기남양주아동보호전문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흥유릉로 248번길 39 다남빌딩 204호 (472-809)	031-592-9818	
강원	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춘천시 성심로 47번길 35 (200-933)	033-244-1391	
	강원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동해시 부곡3길 20-9 2,3층(25735)	033-535-5391	
	강원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강릉시 솔올로 5번길 33 2층(교통, 반트스포츠센터BD) (210-924)	033-644-1391	
	강원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강원도 원주시 남원로469번길 6 (26482)	033-766-1391	
충북	충청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울봉로202번길 66-1(울랑동) (360-897)	043-216-1391	
	충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의림대로 242, 4층(청전동, 제천시보건복지센터) (390-897)	043- 645-9078	
	충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문정1길 19(옥천읍) (300-809)	043-731-3686	
충남	충청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 224(성정동) (330-170)	041-578-2655	
	충청남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홍성군 흥복읍 상하천로 24-1, 3층	041-635-1106	
	충청남도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충청남도 논산시 중앙로384번길 55(취암동)	041-734-6640~1	
전북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팔달로 77 (560-815)	063-283-1391	
	전라북도군산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09, 4층	063-734-1391	
	전라북도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12, 4층 (갈산동 185-3) (570-030)	063-852-1391	
	전라북도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41(향교동) (590-990)	063-635-1391~3	
전남	전라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순천시 삼산로 92-5 (540-958)	061-753-5125	
	전남북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벽라1길 41, 2층	061-870-7200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나주시 예향로 4073, 2층 (520-130)	061-332-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635 3층 (530-830)	061-285-1391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분사무소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남약4로 82번길 19, 4층	061-284-1391	
경북	경북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395번길 24 (780-945)	054-745-1391	
	경북북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안동시 밤적골길 20 (760-070)	054-853-0237-8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경북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대이로25번길 12, 3층(대잠동) (790-825)	054-284-1391	
	경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송정대로 121-5 3층(송정동 80-1 하나빌딩) (730-825)	054-455-1391	
경남	경상남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무학로 558(회원동) (630-823)	055-244-1391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양산사무소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209 (3층)	055-367-1391	
	경상남도아동보호전문기관 거제사무소	경상남도 거제시 옥포로 25길 16, 2층	055-635-9752	
	김해시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385번길 8 2층(부원동) (621-907)	055-322-1391	
	경남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	경상남도 진주시 모덕로 181번길 6(상대동) (660-808)	055-757-1391	
제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원노형로 59(노형동) (690-802)	064-712-1391~2	
	서귀포시아동보호전문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일주동로 8731 2층(서귀동) (697-812)	064-732-1391	

## 2) 학대피해아동쉼터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아동복지법 제53조의 2). 공동생활가정이란 아동복지시설의 한 종류로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4호).

###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2020.9.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운영	65	3	4	2	2	2	3	2	1
지역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운영	12	4	7	3	3	6	6	3	2

### 3) 청소년쉼터

청소년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제32조 등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지원시설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설치한 청소년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쉼터 현황〉

(2020.9 기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홈페이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서울	강남구청청소년쉼터	서울시 강남구 광평로185 태화기독교사회복지관 6층	02-722-1318	
	강서청소년쉼터	서울시 강서구 초록마을로10길 5	02-2697-7377	
	서울시립강북청소년드림센터	서울 강북구 한천로140길 5-26	02-6435-7979	
	서울시립금천청소년단기쉼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114길43, 서울의료원 강남분원 신관 1층	02-3281-8200	
	서울시립금천청소년중장기쉼터	서울금천구 독산로73길 10-16	02-6959-1011	
	서울시립드림일시청소년쉼터	서울시 강남구 봉은사로 114길43, 신관 5층	02-2051-1371	
	서울시립망우청소년단기쉼터	서울 중랑구 송림길156	02-493-1388	
	서울시립신림청소년단기쉼터	서울 관악구 신림5동 1428-12 대경빌딩 3층	02-876-7942	
	서울시립신림청소년중장기쉼터	서울 관악구 난곡로24가길54 301호	02-3281-7942	
	서울시립용산청소년일시쉼터	서울 용산구 만리재로156-1	02-718-1318	
	서울시립은평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서울시은평구 통일로92길37-6 동산힐타운	02-6959-2401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더작은별(동북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02-6239-2014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여우별(서북권)	서울 종로구 종로11길 3층	02-722-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우리별(서남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02-722-1318	
	서울시립청소년이동쉼터 작은별(동남권)	서울 강동구 양재대로 1303 평원빌딩 3층	02-6239-2014	
	어울림청소년쉼터	서울시 강서구 공향대로 48길76, 303호(예루뜨빌라)	02-302-9006	
	은평여자일시청소년쉼터	서울 은평구 통일로89길6-20	02-382-1388	
부산	부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모덕로82	051-303-9672	
	부산광역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덕로82	051-303-9671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부산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255번길58	051-756-0924	
	부산광역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영희네집	부산 금정구 팔송로39번길 109	051-581-1388	
	부산광역시이동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모덕로82	051-303-9677	
	부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부산 사상구 모덕로82 부산광역시청소년종합지원센터	051-303-9670	
대구	달서구청소년쉼터	대구 달서구 와룡로 10안길11	053-526-1318	
	대구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66-5 대구청소년지원재단 4층	053-659-6290	
	대구광역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81길 66-5 (종로1가) 4층	053-754-1388	
	대구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대구 수성구 동원로 1길5 2층	053-764-1388	
	대구광역시중장기여자청소년쉼터	대구 달서구 당산로106 4층	053-426-2276	
	대구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대구 중구 남산로8길 14 3층	053-426-2275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하모니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801 5층	032-468-1318	
	인천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 꿈꾸는별	인천 연수구 원인재로 156	032-817-1318	
	인천광역시청소년중장기쉼터 예꿈	인천 남동구 백범로157번길34-15 원빌리지 301호	032-465-1393	
	인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별마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일로 40번길 85대창스페이스빌라 가동 401호	032-875-771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바다의별(남자)	인천 남구 남주길 125번길5	032-438-131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우리들(남자)	인천 부평구 아트센터로60번길 4 201호	032-442-1388	
	인천시단기청소년쉼터 하늘목장(여자)	인천 부평구 수변로 45-2 201호	032-528-2216	
	인천시일시청소년쉼터 한울타리	인천 부평구 경인로1059번길 10	032-516-1318	
광주	광주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87 3층	062-227-1388	
	광주광역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광주광역시 북구 면양로87 3층	062-227-1388	
	광주광역시중장기청소년쉼터(맥지쉼터)	광주 북구 증가로43 광주 YWCA 5층	062-366-1318	
	광주광역시청소년일시쉼터	광주 동구 지원로34, 5층	062-366-1318	
	광주광역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광주 서구 풍금로 24번길5-1 풍암빌	062-714-1388	
대전	대전광역시중장기청소년남자쉼터	대전 서구 계룡로 342번길108, 현진빌라 402호	042-528-7179	
	대전광역시청소년남자쉼터(단기)	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9, 보육정보센터 5층	042-223-7179	
	대전광역시청소년드롭인센터 우리자리	대전광역시 동구 대전천동로508 청소년위캔센터 6층	042-673-1092	
	대전광역시청소년여자쉼터	대전 중구 대종로 488번길9, 보육정보센터 4층	042-256-7942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대전광역시청소년이동일시쉼터	대전 중구 동서대로 1466번길53	042-221-1092	
	대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대전 서구 도솔로 251번지 18-54 상희빌 402호	042-534-0179	
울산	울산광역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 북구 화동11길 28	052-261-1388	
	울산광역시일시청소년쉼터	울산 중구 먹자거리31	051-245-1388	
	울산남구여자단기청소년쉼터	울산 남구 돈질로27번길 14(신정동,침플러스)	052-269-1388	
	울산남구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 남구 꽃대나리로15번길 6 드림타운 303호	052-265-1388	
	울산울주군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울산 울주군 웅촌면 대북2길 18-1(대북리 269)	052-223-5186	
경기	고양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현중로 26번길, 37-9	031-918-1366	
	고양청소년쉼터동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견달산로 161번길 77	031-969-0091	
	구리민들레청소년쉼터	경기도 구리시 검배로513~4층(수택동)	031-568-1331	
	구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보금자리)	경기도 구리시 교문동 736번지	031-564-7707	
	군포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하나라)	경기 군포시 군포로 791(산본동)	031-399-7997	
	김포시이동형일시청소년쉼터	경기 김포시 사우중로1	031-980-2595	
	남양주시일시청소년쉼터	경기 남양주시 홍유릉로 248번길39, 다남빌딩 203호	031-591-1319	
	부천시모퉁이청소년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763번길 16-23(역곡동)	032-343-1880	
	부천시청소년일시쉼터	경기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58-12, 2층	032-654-1318	
	성남시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29, 력키참조은 201호	031-758-1213	
	성남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 프라자 8층	031-722-6260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남자)	경기 성남시 수정구 위례서일로 12 우남이타워 프라자 8층	031-752-9050	
	성남시중장기청소년쉼터(여자)	경기 성남시 중원구 원터로106번길 4, 3층	031-758-1720	
	성남시청소년일시쉼터	경기 성남시 수정구 탄리로 80, 2층(태평동)	031-758-1388	
수원남자청소년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33길 12-17(인계동)	031-232-4866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수원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수원시 팔달구 행궁로77 송산빌딩 3층	031-232-7982	
	시흥시남자청소년단기쉼터	경기 시흥시 신천동 883-10	031-314-9072	
	시흥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시흥시 오동마을로33 금광빌딩 4층	031-434-1318	
	안산시청소년남자쉼터징검다리	경기 안산시 초지동 743-6번지 제일프라자 501호	031-481-8232	
	안양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FORYOU	경기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65번길31, B동 2층(호계동)	031-455-9182	
	안양시일시청소년쉼터(만들레뜨락)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263번길31 청소년쉼터 3층(안양동)	031-464-1388	
	안양여자청소년쉼터호숙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1동 976-3 봉성빌딩 5층	031-468-5141	
	오산시립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오산시 오산로 366	031-374-1388	
	용인푸른꿈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용인시 수지고 문인로39번길 7 (풍덕천동)	031-276-0770	
	용인푸른꿈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풍덕천로189번길 4-11, 102호	031-267-7733	
	의정부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의정부시 경의로56, 유평빌딩5층	031-829-1318	
	의정부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도 의정부시 비우로12 청소년비전센터 3,4층	031-837-1318	
	의정부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359 5층	031-871-1318	
	이천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나르샤	경기도 이천시 영창로 227번길 28	031-631-7305	
	평택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평택시 매봉산4길 26, 2층	031-652-139	
	화성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기 화성시 봉담읍 매봉로 478, 대호프라자 303호	031-227-7935	
강원	강릉여자단기청소년쉼터	강원 강릉시 금성로28-2(금학동) 2층	033-655-1424	
	강원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보금자리	강원 춘천시 화목원길 166	033-244-5118	
	강원도단기남자청소년쉼터	강원 춘천시 후석로379번길 27 춘천YMCA 4층	033-255-1002	
	강원도단기여자청소년쉼터	강원 춘천시 동면 춘천로 527-40	033-255-1004	
	강원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강원도 춘천시 동면 춘천로527-40 춘천YMCA	033-256-7179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강원 춘천시 후평동 849-6, 강원도 일시청소년쉼터(춘천 YMCA3층)	033-256-0924	
	강원도일시청소년쉼터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충북	충청북도중앙기청소년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신울로166, 3층	043-266-2204	
	제천여자단기청소년쉼터(봄청소년쉼터)	충북 제천시 고암로4가길3	043-643-7946	
	청소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년로 194번길 60-4	043-231-2676	
	청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느티나무	충북 청주시 서원구 안뜸로26번길 10 행운빌 402호	043-276-1318	
	청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com-in)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26번길 23 3층	043-225-1888	
	충주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북 충주시 금봉3길 27 1층	043-911-3479	
	충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북 충주시 봉현로 107	043-852-0924	
충남	공주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공주시 버드나무1길 64(옥룡동)		
	공주시중장기남자청소년쉼터	충남 공주시 감영길1 3층	041-853-1337	
	아산시단기청소년쉼터(남자)	충남 아산시 삼동로29 성심빌딩 4층	041-548-1326	
	아산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아산시 신창면 서부북로 896-36	041-534-1388	
	천안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 34	041-578-1380	
	천안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순천향3길 52 3층	041-576-1316	
	천안청소년단기남자쉼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개목5길34 2층	041-578-1389	
	홍성남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 3층	041-634-656	
	홍성여자단기청소년쉼터	충남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홍성군다기능복지센터4층	041-631-6560	
전북	군산꽃동산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북 군산시 검다메안길6-6, 2층	063-838-1091	
	익산청소년일시쉼터	전북 익산시 남중동60-33	063-857-1091	
	전주임마누엘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진버들6길 30-22(우아동2가)	063-244-1774	
	전주푸른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북 전주시 덕진구 무삼지3길 5-6 (인후동1가)	063-903-1091	
	전주한울안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부 전주시 완산구 범안 1길26-8 402호	063-251-3530	
전남	목포시단기청소년쉼터	전남 목포시 호남로52번길 19-1	061-278-1388	
	목포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남 목포시 수강로12번길1(2층)	061-283-1088	
	목포시청소년중장기남자쉼터	전남 목포시 상리로15번길 19	061-287-1388	
	여수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전남 여수시 대교로 51	061-644-0918	
	여수여자단기청소년쉼터	전남 여수시 무선3길 3층	061-661-0924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경북	경상북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북 안동시 퇴계로 270	054-857-6137	
	경상북도청소년남자쉼터	경북 구미시 형곡로34길 31	054-455-1234	
	구미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북 구미시 원남로10길 13-3	054-444-1388	
	포항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중흥로17번길 43-1	054-284-1318	
	포항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경북 포항시 북구 삼흥로100번길64 2층(두호동)	054-244-1318	
경남	경상남도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마야	경남 창원시 성산구 비음로55번길 14-3	055-274-0924	
	경상남도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클라라의 집	경남 진주시 석갑로 142번길3 장미빌401호	055-745-1316	
	경상남도일시청소년쉼터(남.여)	경남 창원시 성산구 용지로133번길11 3층	055-285-7363	
	김해YMCA여자단기청소년쉼터	경남 김해시 분성로 277, 5층	055-332-1318	
	창원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하라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37번길 6-4	055-237-1318	
제주	서귀포시남자단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동로35	064-739-9805	
	서귀포시여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2	064-733-1376	
	제주시남자중장기청소년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랑길47	064-759-1388	
	제주시단기청소년쉼터(여자)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만덕로3길2, 3층	064-751-1388	
	제주시일시청소년쉼터(이동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별랑길47	064-723-0179	
	제주특별자치도일시청소년쉼터(고정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한림읍 명월로324-3	064-796-0922	

#### 4)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자립지원관은 청소년기본법 제17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 및 동법 제32조 등에 근거한 청소년복지지원시설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청소년기본법 제18조) 설치한 청소년자립지원관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자립지원관 현황〉

(2019.12. 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시청소년자립지원관	서울 강동구 강동대로 오륜커뮤니티센터 602	02-6959-5012	
인천	인천광역시청소년자립지원관 별바라기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장로 367번길 40	032-875-1319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인천	인천광역시 청소년자립지원관 행복자리	인천광역시 남동구 문화로 169번길 40-17, B동 301호(간석동,가람주택)	032-467-1398	
경기	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군포시 군포로 789 온누리청소년센터 2층	031-928-1316	
경기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71번길 21-13	031-360-1824	

## 5) 해바라기센터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법률, 수사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함으로써 피해자가 폭력 피해로 인한 위기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 운영된다(동법 제18조, 시행령 제6조, 시행규칙 제8조). 형법,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를 지원한다.

### 〈해바라기센터 현황〉

(2020.9. 기준 '해바라기센터'(여성가족부)홈페이지)

지역	주소		연락처		비고 (운영기관)
서울	서울 종로구 동숭동 1-49 동숭빌딩 2층		본관	02-3672-0365	서울대병원
			별관	02-745-0366	
				02-745-367	
서울북부	서울 동대문구 망우로 82 서울북부해바라기센터		02-3390-4145	삼육서울병원	
서울중부	서울 중구 을지로 245(을지로 6가 18-79)		02-2266-8276	국립중앙의료원	
부산	부산 서구 구덕로 179 부산대학교병원 내 융합의학연구동 6층		051-244-1375	부산대병원	
대전	대전 중구 문화로 282 충남대학교병원			042-280-8436	충남대병원
				042-280-8437	
울산	울산 남구 월평로171번길 13 울산병원 8층		052-265-1375	울산병원	
경기남부	거점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79번길 7 도병원약국 3층		031-217-9117	아주대병원
	통합	경기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64	별관	031-215-1117	
		아주대병원 내 경기남부해바라기센터 거점	응급	031-216-1117	
경기 북서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화정로 65-1 우리프라자 5층 501호		통합	031-816-1375	명지병원
			응급	031-816-1374	

지역	주소		연락처		비고 (운영기관)
강원서부	강원 춘천시 백령로 156 강원대학교병원 어린이병원 지하2층		033-252-1375		강원대병원
강원동부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419번길 42		033-652-9840		강릉동인병원
	강릉동인병원 별관				
강원남부	강원 원주시 일산동 162-33		033-735-1375		원주세브란스 기독교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교병원(문창모기념관 4층)				
전북서부	전북 익산시 무왕로 859 원광대병원		063-859-1375		원광대병원
전남	전남 영광군 영광읍 신남로265, 6층		061-351-4375		영광기독교병원
경북동부	경북 포항시 남구 대잠동길 17 포항성모병원 루가관 지하3층		054-278-1375		포항성모병원
경남서부	경남 진주시 강남로 79 경상대학교병원		055-754-1375		경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3층				
제주	본관	제주 제주시 도령로 65, 2층(연동, 한라병원)	본관	064-749-5117	한라병원
	별관	제주 제주시 남녕로 5-3 3층	별관	064-748-5117	

## 6) 여성긴급전화136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는 가정폭력피해의 신고접수, 피해자 긴급구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긴급전화센터를 설치 운영하여야 하고, 이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4조의6).

### 〈여성긴급전화1366 현황〉

(2020.9. 기준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역	주소	연락처	비고
중앙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원로 158 아림빌딩 4층	1366	
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2 3층	02-1366	
부산	부산광역시 금정구 중앙대로 2238	051-1366	
대구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해밀센터 내	053-1366	
인천	인천광역시 부평구 백범로 557번길 20, 경인센터 5층	032-1366	
광주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자유로 73 광주여성발전센터 내	062-1366	
대전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128 대전 YMCA 2층	042-1366	
울산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62 3층	052-1366	
강원	강원도 춘천시 동내면 학곡동 1길 13	033-1366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로 200번길 영통우리빌 가동 303호	031-1366	

지역	주소	연락처	비고
경기북부	경기도 의정부시 둔야로 54-1	031-1366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여성발전센터 내	043-1366	
충남	충남 공주시 무령로 592, 601호	041-1366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67-5	063-1366	
전남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어진누리길 30 전남여성플라자 5층	061-1366	
경북	경북 김천시 평화12길 10, 2층	054-1366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로 179-18	055-1366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우정로 6길 23	064-1366	

## 7) 성폭력상담소 및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성폭력방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담소 설치 운영을 신고한 자는 성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10조).

### 〈성폭력상담소 현황〉

(2020.5. 기준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홈페이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서울 (12개소)	가족과 성건강 아동청소년상담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 86, 808호 (오류동, 동선 오피스텔)	02) 2688-1366
	벤엘성가족상담센터	서울 금천구 시흥대로 102, 301호	02) 896-0401
	서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서초대로27길 10-10	02) 599-7606
	이레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사로 120-1 성준빌딩5층	02) 865-1366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로 15마길 8-13	02) 825-1272
	탁틴내일 청소년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3길 3 지하2층	02) 3141-6191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성지1길 32-42 2층	02) 338-5801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623 오성빌딩 301호	02) 883-9284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문로22길 28 신일빌딩4층	02) 953-1504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6길 39, 시민공간 나루 3층	02) 335-1858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대로 16길 8-4	02)2263-646402 )2263-6465
	휴샘가정폭력성폭력 통합운영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로 47 나길 24 경우빌딩 402호	02) 2664-1366
인천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남구 경인로345 인천명품관 3층	032) 865-1365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3개소)	여성단체협의회 부설 가정·성폭력상담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인천지회 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142	032) 451-4091~5
	강화여성의전화 부설 강화여성상담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길 44번길 8-4	032) 934-1903
경기 남부 (14개소)	군포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군포시 산본로 323번길 20-33 대원플라자 802호	031) 399-0201
	부천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 248번길 86 현해탑프라자 302호	032) 328-9711
	부천청소년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149	032) 655-1366
	사람과평화 부설 용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갈곡로 8번길 11 102호	031) 284-1366
	성남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3층	031) 751-1120
	사단법인 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녹산빌딩 7층	031) 224-6888
	씨알여성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 129번길 13	031) 797-7032
	안산YWCA 여성과성상담소	경기도 안산시 광덕서로 66 하늘법조빌딩 412호	031) 413-9414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사인빌딩 5층	031) 466-1366
	사단법인 원선복지회 부설 평택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평택시 원평로 105번길 29 1층)	031) 618-1366
	하남성폭력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205번길 27 서해상가 4층	031) 796-1213
	행가래로 의왕가정·성상담소	경기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	031) 452-1311
	김포여성상담센터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양곡1로 56번길 3, 4층	031) 984-1367
	사)시흥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경기도 시흥시 마유로330 대하빌딩 501~502호	031) 496-9494
경기 북부 (6개소)	고양파주여성민우회 부설 고양성폭력상담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32-21 로데오메탈릭타워 602-2	031) 919-1366
	남양주가정과성상담소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로 46, 301호 (금곡동 양지빌딩)	031) 558-1366
	동두천성폭력상담소	경기도 동두천시 어수로 5	031) 861-5555
	고양파주 여성민우회 부설	경기도 파주시 금빛로 44 마이프라자 502호	031) 946-0366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파주성폭력상담소 '함께'		
	포천가족성상담센터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호국로 571 (정우빌딩3층)	031) 542-3171
	연천행복뜰상담소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학담로 131	031) 832-1315
강원 (8개소)	사)강원여성가족지원센터 부설 춘천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35 (춘천 축산농협 효자지점) 3층	033) 257-4687
	속초성폭력상담소· 장애인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속초시 동해대로 4307 2층	033) 638-1988
	영월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단종로 34	033) 375-1366
	강릉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454 강릉시평생학습관 2층	033) 652-9556
	동해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동해시 중앙로 188 2층	033) 535-4943
	함께하는공동체 부설 원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307호(원주시사회복지센터)	033) 765-1366
	아라리가족성상담소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담길 73	033) 563-8666
	행복만들기상담소 (횡성군통합상담소)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북천서로 3번길 15	033) 344-1366
충남 (10개소)	세종YWCA 성인권상담센터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을 군청로 87-16 조치원청사 2층	044) 862-9191 044) 862-9192
	종촌 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음1로 116 (종촌종합복지센터 3층)	044) 866-1366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모임 충청지부태안군성인권상담센터	충남 태안군 태안읍 후곡로 62 202호	041) 675-9536
	사)법률구조법인 대한가정법률복 지상담원 아산지부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 (공수리 1037)	041) 546-9191 041) 546-9181
	로멤나무상담지원센터	충남 공주시 신금 1길 44-11 뉴턴학원빌딩 4층	041) 852-1950
	천안여성의전화부설 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고재 20길 12, 천안신협 2층	041) 561-0303
	충남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중앙로 66번지 2층	041) 564-0027
	홍성통합상담지원센터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충서로 1121-32, 2층	041) 631-3939
	부여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사비로 32	041) 837-1366
	당진가족성통합 상담센터	충청남도 당진시 서부로 67 윤암빌딩 2층	041) 354-2366
충북 (5개소)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 청주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내수동로 20(북대동)	043) 264-1366
	사)명락복지재단 부설 제천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제천시 내제로 5길 12 (명동 190-3)	043) 652-0049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청주성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2, 3층	043) 252-0966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길 4 청주 YWCA 1층 여성종합상담소	043) 268-3008
	충주 생명의전화 부설 충주성폭력상담소	충북 충주시 사직산 21길 34복합복지관 302호	043) 845-1365
대전 (1개소)	대전YWCA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042) 255-0004 042) 255-0078
전남 (8개소)	나주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나주시 중앙로 50(성북동) 유선빌딩 3층	061) 332-1366
	담양인권지원상담소	전남 담양군 담양읍 중앙로 18	061) 381-1366
	무안여성상담센터	전남 무안군 삼향읍 대죽동로 32 센트럴프라자 B동 202호	061) 281-1360
	함평보두마상상담센터	전라남도 함평읍 외대화길 27 하나캐슬 203동 101호	061) 322-7422
	여수성폭력상담소	전남 여수시 여항로 6	061) 666-4001
	전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순천시 서문성터길 104	061) 755-8033
	해남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북부순환로 30	061) 533-9181
	행복누리 부설 목포여성상담센터	전라남도 목포시 신흥로 83번길 5, 2층	061) 283-4552
전북 (5개소)	군산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동 구영 7길, 구)월명동사무소 1층	063) 445-13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 김제지부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김제시 금성로 53-1	063) 546-13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 부설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인정 2길 2-4, 전북노회회관 3층	063) 236-1366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정읍지부 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정읍시 수정동 충정로 273, 대울빌딩 5층	063) 537-1366
	익산성폭력상담소·장애인성폭력 상담소	전라북도 익산시 인북로 187 익산상공회의소 5층	063) 834-1366
광주 (3개소)	광주여성의전화부설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	062) 363-0487
	광주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196번길 3 삼호센터별관 102호	062) 521-1365~6
	인구협회 광주성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816 (4층)	062) 673-1366
제주 (2개소)	제주여성인권연대 부설 제주여성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관덕로 8길 32, 2층	064) 755-1366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무로 11길 3	064) 748-304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대구 (3개소)	대구여성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록로54 2층	053) 745-4501~2
	대구여성의전화 부설 여성인권상담소피어라	대구광역시 남구 봉덕로 41, 동영빌딩 5층	053) 471-6482~3
	인구보건복지협회 대구·경북지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서구 국제보상로 46길 16	053) 566-1900
경북 (8개소)	경주다움성폭력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현곡면 안현로 54-11(3층)	054) 777-1366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광평길 41, 3층	054) 463-1388
	로템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하양읍 대경로 766	053) 853-5276
	새경산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경산시 남매로 41 202호	053) 814-1318
	칠곡종합상담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054) 973-8290
	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송림동 10번길 6-2	054) 282-1470
	필그림 가정복지통합상담소	경상북도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 534-9996
	사단법인 한마음 부설 한마음상담소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죽도로 40번길 8-3 3층	054) 278-4330
경남 (12개소)	거창성·가족상담소	경남 거창군 거창읍 강남로 1길 170번지(2층)	055) 944-1828
	사)경남여성회부설 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가고파오피스텔 505호	055) 244-8400
	김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김해시 김해대로 2495 화성빌딩202호	055) 329-6451
	진주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477번길 11,2층	055) 747-1366
	진해여성의전화 부진해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총장로 511번길 16, 4층	055)546-8322
	창녕 성·건강가정상담소	경상남도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172번지	055) 521-1366
	창원 여성의전화 부설 창원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신월로 42 토월복합상가 725호	055) 267-1366
	통영YWCA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통영시 동충 1길 4, 2층	055) 642-0233
	함안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용산2길 70(1층)	055)587-1367
	하동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하동군 하동읍 섬진강대로 2222 하동문화예술회관 1층	070) 4131-1366
	거제YWCA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거제시 탐곡로 75길 (아주동) 근로자가족복지회관 2층	055)682-1361
	밀양시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268 (여성회관, 1층)	055)391-1366
부산 (5개소)	부산 성폭력상담소 부설 부산 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6호	051) 558-8832 051) 558-8833
	사)부산여성의전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607, 4층	051) 817-6464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성·가정폭력상담소	(가야동 50-4)	051) 817-6474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차성로 290 404호	051) 531-1366	
	다함께성·가정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연수로 392(광안동)	051) 753-1377	
	인구보건복지협회 부산지회성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425(남천동)	051) 624-5584	
울산 (3개소)	사)생명의전화울산지부 부설 남구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 삼성빌딩 505호	052) 267-1366 052) 269-91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울산지부 부설 울산성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중구 중앙길 127, 3층	052) 245-1366	
	울산 동구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동구 내진길 18, 2층	052) 252-6770	
장애 권역 (23개소)	서울	한국여성복지상담협회부설꿈 누리여성장애인상담소	서울시 중랑구 망우로244 덕화빌딩 6층 602호	02) 902-3356
		장애여성공감부설 장애여성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올림픽로 664 대우그한강베네시티 상가 101동410호	02) 3013-1367
		한국여성장애인연합부설서울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402호	02)3675-4465
		한사회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357 려산빌딩 지하1층	02) 2658-1366
	인천	인천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707호	032) 424-1366
		오내친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137-10 107동101호	032) 504-5479
	경기	경원사회복지회부설여성장애 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정북로 92 태평동락커뮤니티 303호	031) 755-2526
		의정부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호국로 1426 (금오동/4층)	031) 840-9203
	대전	대전여성장애인연대부설 대전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서로 9, 월평빌딩 3층	042) 223-8866
		동대전장애인성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76번길 15-4 동진프라자 3층 22호	042) 637-1366
	충남	충남지체장애인협회부설장애 인성폭력 아산상담소	충청남도 아산시 변영로 115번 20-14 LK빌딩 201호	041) 541-1514
		충남장애인복지정보화협회부 설천안 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두정역서 5길 4 두정프라자 301호	041) 592-6500
	충북	충북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청주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26번길 15-2 한정빌딩 2층	043) 224-9414
	광	광주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좌로 382번길 8	062) 654-1366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주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지체장애인협회 부설 제주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로 3길 1-4번지 4층	064) 756-4980
대구	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월배로 410,4층(삼부빌딩)	053) 637-6057
경북	경북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안동시 태화중앙로 60-1. 3층	054) 843-1366
	(사)국제문화교육진흥원 영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북도 구미시 문장로 12길 18-1(1층)	054)443-1366
경남	경남여성장애인연대 부설 경남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동 10길 56, 고파오피스텔804,805호	055) 241-5041
부산	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종합회관4층	051) 583-7735
울산	울산장애인인권복지협회부설 울산장애인성폭력상담센터	울산광역시 울주군 범서읍 천상중앙길 104번지. 402호	052) 246-1368
전남	전남여성장애인연대부설목포 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남도 목포시 영산로 361. 2층	061) 283-4767
전북	(사)행복나눔지원센터부설 새벽이슬장애인성폭력상담소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67 명진빌딩 (2층)	063) 223-3015

### 8) 가정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상담소 설치 운영을 신고한 자는 가정폭력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5조).

가정폭력방지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나 그 밖의 비영리법인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동법 제7조).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현황〉

(2020.9. 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11	3	3	1	4	1	1	12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개소)	5	3	4	4	4	2	6	2

### 〈가정폭력상담소 현황〉

(2020.9. 기준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서울 특별시	한국여성상담센터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22길 신일빌딩 4층	02-953-1704	
	한국여성의전화 여성인권상담소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16길 8-4	02-3156-5400	
	휴샘통합상담센터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47나길 24, 경우빌딩 402호	02-2664-1366	
	(사)아하가족성장연구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창의문로 10길 11 일민빌딩 4층	02-379-8558	
	성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시 종로구 인왕산로 1가길 11	725-7077	
	한국가정법률상담소중구지부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시 중구 청구로 19길 9-15	02-2238-6551	
	용산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시 용산구 백범로51길 3 (효창동)	02-707-1849	
	(사)다문화종합복지센터 부설 다사랑가정상담소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19 3층	02-713-0284	
	서울성동가정상담센터	서울시 성동구 무학로2길 7. 3층	02-2297-2911	
	음악치료가정상담소	서울시광진구중곡3동192-59	02-461-5548	
	희년여성상담소	서울시 광진구 자양로 71-7	02-453-1366	
	희망가정폭력상담센터	서울시 광진구 광장동 330-8	02-3437-0195	
	동대문행복한심리상담센터	서울시 동대문구 한천로 244-7, 1층	02-2248-7702	
	희망가정폭력상담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1길 11 (회기동 어린이청소년비전센터 3층 302호 희망가정폭력상담소)	02-959-0101	
	해움가족상담소	강북구 삼각산로 138 3층	980-1366	
	월계우리가족상담소	서울시 노원구 초안산로 1길 15	02-904-0179	
	은평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은평구 은평터널로 48	02-326-1366	
	서대문가정폭력관련상담소	서울시 서대문구 신촌로 215-2	02-364-0413	
	마포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마포구 독막로 248-1	02-706-1366	
	성원가정폭력상담소	서울마포구와우산로26길	010-5389-3569	
	(사)남성의 전화 부설 서울가정폭력상담센터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현대41타워 1016-1호)	02-2653-1366	
	대한가정법률복지상담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양천구 오목로 176, 산호빌딩 2,4층 (신정동)	02-2697-0155	
	나우미가정폭력상담센터	서울시 양천구 목동동로 293, 2715-1호	02-2062-1366	
	사단법인 늘푸름상담협회 부설 가정행복상담센터	서울시 양천구 중앙로 308-1, 하나로빌딩 2층	02-6083-9191	
	서울강서양천여성의전화 부설 강서양천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59 인품빌딩 5층	02-2605-8455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서울한영대학교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구로구 경인로 290-42	02-2669-2247	
	한울가족상담센터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413	02-849-2255	
	꿈터가정폭력상담소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방로13길 14	02-6083-4972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 가길 14	1644-7077	
	동작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 398 가나빌딩 3층	02-820-9725	
	푸른나무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986경은빌딩4층	02-871-5086	
	동산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7길 10-10	02-599-7646	
	잠실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송파구 석촌호수로 220 보정빌딩 402호	02-2202-7806	
	강동구가정상담센터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138길4(명일동)	02-429-2121	
	도봉구가정폭력상담소	서울시 도봉구 덕릉로 260, 4층	02-995-0808	
부산 광역시	(사)부산여성장애인연대 부설 성가정통합상담소	부산 중앙대로 196번길 12-3, 부산장애인회관 4층(초량동)	051-583-7735	
	성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대로255번길 15	051)817-4344	
	부산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 동래구 중앙대로 1523 SK허브스카이 A3동 05,06호	051-558-8833	
	다함께 성·가정상담센터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 392	051-753-1377	
	사)기장열린상담소 부설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산시 기장군 차성로 290동양프라자 404호	051-531-1366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예방협회 부설 성가정폭력통합상담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581-10번지	051-853-1366	
	중부산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중구 중앙대로 81번길2	051-462-7177	
	(사)부산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부산시 조방로 49번길 29 705호 (범일동, 호림빌딩)	051-469-2987	
	희망의정화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488 (대연동)	051-623-1399 051-623-1488	
	사)여성문화인권센터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부산시 북구 만덕대로 90번길 13 대방상가 3층 305호	051-333-1360	
	사하가정폭력상담소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하로 133-1(괴정동)	051-205-8296	
	강서가족상담센터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국제8로 245	051-204-8897	
	사상가족상담센터	부산광역시 사상구 운산로 74(괘법동)	051-323-1366	
대구 광역시	대구여성폭력통합상담	대구시 수성구 상록로 54	053-745-4501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대구시 달서구 월배로 410	053-637-6057, 6064	
	영남가정폭력상담소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49길 6	053-953-2848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대구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대구시 남구 봉덕로41 동영빌딩 5층	053-471-6484	
인천 광역시	사)인천여성단체협의회부설가정· 성폭력통합상담소	인천시 미추홀구 경인로 345	032-865-1365	
	서인천가족상담소	인천 서구 승학로 247	032-564-1366	
	중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 광역시 중구 우현로 39번길2	032)761-7070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인천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소로29	032-865-1120	
	가족사랑상담소	인천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03번길 120	032-874-6661	
	미추홀구가정폭력상담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 314	032-437-1141	
	사)인천내일을여는집 가족상담소	인천시 계양구 계양산로 102번길5 계양구사회복지회관 지하1층	032-543-7179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송도지부 부설 송도가족상담소	인천시 연수구 아트센터대로 175	032) 834-1369		
광주 광역시	광주여성인권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404번길 15	062-363-0487	
	광주장애인가정상담소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로79번길 4-1	062-654-0420	
	광주YWCA가정상담센터	광주광역시남구 제중로46번길 1	062-672-1355	
	송광한가족상담센터	광주광역시 광산구 우산로 96번길 66 대덕훼미리상가 3층	062-452-1366	
	광주가정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60	062-222-9190	
	충신가정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북구 군왕로 85, 3층 (두암동)	062-671-8282	
	한마음가정폭력상담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65번길 3	062-045-1360	
	한가정상담센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87-1, 쌍촌시영복지관 2층	010-4617-4115	
가족사랑상담소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2로 14	010-2661-7529		
대전 광역시	대전YWCA성폭력·정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로 128	042)254-3038	
	대전열린가정폭력상담소	대전시 동구 계족로368번길 81	042-625-5441	
	대전가톨릭가정폭력상담소	대전시 대덕구 한남로 150번길 16	042-636-2036	
	들꽃가정폭력상담소	대전시 서구 신갈마로211번안길 57(갈마동)	042-534-0477	
	공감가정폭력상담소	대전광역시 유성구 계룡로 18번길 51 3층 4호(구암동 삼정하이츠상가)	042-822-1366	
울산 광역시	울산 남구 통합상담소	울산광역시 남구 문수로 313삼성빌딩 505호	052-265-5570	
	동구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	울산 동구 내진길 18 2층	052-252-6778	
	(사)울산여성회부설 북구가정폭력상담소	북구 상방로 141 2층	052-287-1364	
	북울산가정폭력상담소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로 313 성우현대아파트 상가 208,209호	052-295-031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경기도	사단법인수원여성의전화 부설 통합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중부대로 20	031-232-7795	
	성남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성남시 수정구 수정로 115-1 주민신희행복빌딩 3층	031-751-2050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49	031-442-5385	
	(사)시흥여성의전화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마유로 330 대하빌딩 501~501호	031-496-9390	
	이천가정.성폭력상담소	이천시 영창로 213 서영빌딩 F층	031-638-7200	
	행가래로 의왕가정·성상담소	의왕시 전주남이길 23-4	031-452-1311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수원시 팔달구 향교로 161중동, 우림빌딩 501호	031-243-460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성남지부 부설 성남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546. 1층(야탑동)	031-707-6661	
	굿패밀리상담센터 (가정폭력상담소)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 356, 5층	031-733-0675	
	부천가정법률상담소 부천지부 부설 부천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소사구 성주로 272 4층	032-663-2313	
	행복가정폭력상담소	부천시 석천로 13번길, 4층	032-612-1366	
	(사)행복터 부설 용인가정상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로 60번길 3 골드프라자 801호	031-286-1758	
	(사)해피패밀리 가족상담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793	031-281-8891	
	경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64	031-419-1366	
	안산가정폭력상담소	안산시 단원구 광덕동로 71네오빌딩 405호	031-486-4366	
	안산상담심리연구소	안산시 단원구 신길로1길62 102호	031-493-8007	
	다리꿈상담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광덕1로 370 코스프라자 406호	031-416-7179	
	안양ywca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 604, 2 (호계동)	031-427-1366	
	한국가정법률상담소평택안성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평택시 이충로 84-6평택시평생학습센터 (구 여성회관)중1층	031-667-5977	
	오산느루가정폭력상담소	오산시 원동로37번길 40, 401호	376-4326, 378-6663	
	화성가정상상담소	화성시 매송면 화성로2393,303호	031-296-1055	
	닥터오심리상담센터	화성시 동탄역로 124, 윤정프라자 901호	031-374-8508	
광명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광명시 도덕 공원로 64-1	02-2060-0245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경기도	2가정사랑훈련학교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 8번길 35-10 301호	031-398-1366		
	광주열린상담소	경기도 광주시 광주대로97번길 18	031-766-3395		
	(사)김포여성의전화 (부)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김포시 북변중로 68번길 20(북변동) 종합복지회관 2층	031-986-0136		
	안성가정행복상담센터	안성시 현수길 26-14	031-671-9191		
	(사)정해복지부설 하남행복한가정상담소	경기도 하남시 신장로 130-5, 601-1호	031-794-4111		
	여주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여주시 세종로 45번길 8	031-885-7651		
	양평가정상담소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시민로 47,2층	031-775-4982		
	고양YWCA가족사랑상담소	경기도고양시 일산서구 주엽로 134, 시대프라자 5층	031-921-1366		
	덕양가정상담센터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893-1 위너스21빌딩 8층 803호	031-965-9119		
	남양주한마음가족상담소	남양주시 오남읍 진건오남로 671번길 24	031-574-7189		
	남양주가족상담센터	남양주시 평내로 161번길 7-7	031-595-1238		
	경기북부가정문제상담소	의정부시 장곡로 596번길 19골드타워 4층 402호	031-876-7544,5		
	하나가정연구원 하나가정폭력상담소	경기도 의정부시 추동로91번길 6, 201호 (신곡동,세원빌딩)	031-852-0142		
	사)가화부설가족상담센터	구리시 별말로 129번길50, 3층	031-551-9976		
	구리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딸기원로8번길 45	031-569-0101		
	두레가정폭력상담소	구리시 수택동 521-1번지	031-552-8448		
	양주가정폭력상담소	양주시 독바위로5,	031-864-7546		
	사단법인 해피패밀리 포천지부 희망가족상담소	포천시 중앙로 119번길 20	031-531-2821		
	강원도	춘천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원 춘천시 효자로 135	033-257-4687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	강원도 원주시 갈머리2길 31, 사회복지센터307호	033-765-1366	
강릉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강릉시 강릉대로 454 강릉시평생학습관 2층	033-652-9556		
동해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동해시 천곡동 중앙로188 2층	033-535-4943		
삼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강원 삼척시 원당로2길 72-6	033-575-1366		
행복만들기상담소		황성군 황성읍 북천리 3번길 15, 115-62	033-344-1366		
(사)강릉여성의전화 부설 해솔상담소		강릉시 토성로 162 벽산빌딩 3층	033-643-1982 033-643-1985		
태백가정폭력상담소		태백시 보드미길40	033-554-4005		
속초가정폭력상담소		강원도 속초시 변영로 184 세광빌딩 2층	033-635-352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사)너브내 가족상담센터 부설 홍천가족상담소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남산마을길1길 8	033-433-1367	
	철원가정폭력상담소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텃골3길 17	033-452-1566	
충청 북도	청주YWCA여성종합상담소	청주시 흥덕구 1순환로 536번길4	043-268-3007	
	영동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영동군 회동로 212-1	043-742-8482	
	청주가정법률상담소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158번길5	043-257-0088	
	충주YWCA가정폭력상담소	충주시 중앙로 113,	043-842-9888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제천시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제천시 의림대로6길 32	043-645-5690	
	음성가정(성)폭력상담소	충북 음성군 음성을 시장로 54	043-873-1330	
충청 남도	대천가족성통합상담센터	충남 보령시 대천로 35	041-936-7941	
	아산가정성통합상담센터	충남 아산시 배방읍 순천향로 1060	041-546-9191	
	당진가족성통합상담센터	충남 당진시 서부로 67 운암빌딩 2층	041-354-2050	
	금산성가정통합상담소	충남 금산군 금산읍 비호산로57 삼호아파트상가 201호	041-450-7366	
	홍성 성가정통합상담소	충남 홍성읍 충서로 1121-32	041-631-3939	
	가족성장상담소남성의소리	천안시 동남구 통정8로 5-24	041-572-0115	
	충남가족과성상담소	천안시 서북구 쌍용대로 289-4	041-578-1145	
	공주시가족상담센터	충남 공주시 제민천3길 22(중학동)	041-854-1366	
	해들가족상담소	아산시 번영로 113-19	041-547-5004	
	서산가족상담지원센터	충남 서산시 읍지8로 60	041-668-8566	
	논산YWCA 가정폭력상담소	충남 논산시 중앙로 398번길 29-9	041-736-8297	
	새샘가족상담센터	충남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9길 32, B동 3층	041-943-1366	
	예산가정상담소	예산군 예산읍 아리랑로 73	041-334-1366	
전라 북도	남원YWCA통합상담소	전라북도 남원시 시청로 65	063-625-1318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노송광장로 7	063-244-0227	
	전주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338 3층	063-287-7325	
	(사)군산여성의전화 부설가정폭력상담소	전북 군산시 구영 7길 8	063-445-2285	
	한국가정법률상담소 군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 군산시 대학로 36-1	063-442-1560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 익산시 인북로 168 2층	063-851-5113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익산여성의전화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72-1	063-858-9191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정읍지부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정읍시 충정로 348	063-535-8223	
전라 남도	목포여성상담센터	목포시 신흥로83번길 5, 2층	061-285-1366	
	여수여성상담센터	여수시 동문로 120	061-654-5211	
	순천여성상담센터	순천시 호남길 3	061-753-9900	
	광양여성상담센터	광양시 광양읍 성북길 39	061-761-1254	
	고흥나누리상담센터	고흥군 고흥읍 고흥로 1762-2, 2층	061-832-1360	
	어울림가정상담센터	전남 화순군 화순읍 진각로 118-1	061-371-1366	
	영암행복한가정상담소	영암군 삼호읍 녹색로 1113	061-461-1366	
	무안열린가정상담센터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07 월암빌딩	061-454-1365	
	함평열린가정상담센터	함평군 함평읍 남일길 42 1층	061-324-1366	
	영광여성상담센터	전남 영광군 영광읍 중앙로 230-1	061-352-1322	
경상 북도	(사)포항여성회 부설 경북여성통합상담소	경북 포항시 남구 송림로10번길 6-2	054-284-0404	
	구미여성종합상담소	구미시 광평길 41(3층)	054)463-1386	
	필그림가정복지상담소	경북 상주시 영남제일로 1368	054-534-5999	
	문경열린종합상담소	문경시 남부3길 19	054-555-8207	
	칠곡종합상담센터	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석전로 69-35	054-973-8290	
	포항YWCA가정폭력상담소	포항시 남구 포스코대로358 일선빌딩 6층	054-277-5418~9	
	사)포항생명의전화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포항시 북구 중앙로419번길 21 대동우방타운상가2층 120동201호	054-242-0015	
	로템나무가정문제상담소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동해대로 1562 흥해종합상가 A동 2층	054-262-3554	
	포항미래상담소	포항시 북구 탑산길10번길7(2층)	054-255-1192	
	희망상담소	포항시 북구 선착로 12(대신동)	054-256-5670	
	한국가법포항부설 포항가정폭력상담소	포항시 북구 신덕로 277, 울정빌딩 201호	054-283-7555	
	강은희심리상담센터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8 2층 203호	054-252-2017	
	경주시가정폭력상담소	경주시 원화로 341번길 7	054-749-1366	
	안동가정법률상담소 부설 가정폭력관련상담소	안동시 영가로 12-1(3층)	054-856-4200	
	영주소백가정상담센터	영주시 구성로 215, 2층	054-638-1366	
	샘물가족상담센터	영주시 풍기읍 기주로 85-1	054-635-9191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영천시 완산중앙3길 30(3층)	054-333-9125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상주가정문제상담소	상주시 함창읍 함창중앙로 156	054-541-6116	
	경산가정폭력상담소	경북 경산시 중앙초등길3	053-814-9191	
	윤택한알가정폭력상담소	경북 의성군 안계면 안신로181-21	054-862-9256	
	의성가정폭력상담소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41	054-832-2666	
	울진가정폭력상담소	울진군 울진읍 읍내8길 26	054-782-1153	
경상 남도	진해가정상상담센터	창원시 진해구 태평로 50	055-551-2332	
	마산가정상상담센터	창원시 마산회원구 양덕옛3길5	055-296-9126	
	한국가정법률상담소창원마산지부 부설 창원가정상상담센터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663번길7 대한빌딩 401호	055-261-0280	
	진주가정폭력상담소	경상남도 진주시 진양호로360	055-746-7988	
	사천YWCA가정폭력상담소	사천시 동금로 12, 3층	055-834-1253	
	(사)김해여성회 부설 가정폭력상담소	경남 김해시 가야의길 92-25 2층	055-326-6253	
	(사)장유하늘가족상담센터	경남 김해시 계동로 233 마루애빌딩 503호	055-326-8291	
	(사)거제가정상상담센터	거제시 거제중앙로 13길 22	055-6337638	
	통영시가정폭력상담소	통영시 안개4길 94	055-640-7795	
	양산가족상담센터	경남 양산시 서일동 2길 8. 2층	055-362-1366 055-366-4001	
	양산가정폭력상담소	양산시 명동 6길 19(명동)	055-366-6661	
	고성가족상담소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중앙로 87-1 무지개아파트 상가 2층	055-673-2911	
	보물섬가정행복상담소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 32	055-864-1366	
	합천가정행복상담센터	경남 합천군 합천읍 동서로 39 종합사회복지관 3층	055-934-1366	
제주 특별 자치도	서귀포가정행복상담소	서귀포시 중앙로42번길 46,5층	064-732-3279	
	제주여성장애인상담소	제주시 복지로3길 1-4 4층	064-753-4980	
	제주가족사랑상담소	제주시 중앙로 195. 2층	064-726-3277	
	제주YWCA통합상담소	제주시 삼무로 11길 3	064-748-3040	
	종촌종합복지센터 가정.성폭력통합상담소	세종특별자치시 도움1로 116, 3층	044-850-3091	

## 9) 대한법률구조공단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는 법무부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국민의 권익실현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법률구조법 제8조에 의거, 설립되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 현황〉

(2020. 9. 기준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서울	서울중앙지부	(06596) 서울 서초구 법원로4길 17	02-3482-0132	
	서울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1378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50 스타갤러리빌딩 9층	02-3482-1708	
	서울주택·상가건물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	(06596) 서울시 서초구 법원로 2길 21	02-6941-3430	
	서울동부지부	(05854)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원로 114, 엠스테이트 B동 317호	02-453-0708	
	서울남부지부	(08087) 서울 양천구 신월로366 승소빌딩 2층	02-2646-6117	
	서울북부지부	(01308) 서울 도봉구 도봉로801 제일정형외과5층	02-978-4240	
	서울서부지부	(04207)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80 마포법조빌딩	02-713-6039	
인천/ 경기도	의정부지부	(11615) 경기 의정부시 서부로 707, 2층	031-876-0954	
	포천지소	(11147) 경기 포천시 중앙로87 포천시청 본관3층	031-531-5304	
	가평지소	(12418) 경기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 166, 3층	031-581-0053	
	남양주지소	(12249) 남양주시 경춘로 522, 남양주시청 제2청사 평생교육원 2층	031-523-9202	
	연천지소	(11013)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연천로 296 2층	031-8088-8042	
	고양출장소	(10414)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3층	031-903-5132	
	파주지소	(10894) 경기도 파주시 금바위로 42 운정법조타운 8층 818호(와동동 1384)	031-937-8500	
	인천지부	(2222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032-874-3374	
	인천개인회생·파산중 합지원센터	(22221)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학익동) 대흥빌딩 7층 701호~704호 706호~707호	032-874-3374	
	강화지소	(23025)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강화대로 306, 2층	032-724-9100	
	부천출장소	(14623)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4, 다성빌딩 10층 1001호	032-325-5322	
김포지소	(10109) 경기도 김포시 사우중로3번길 13-17 (사우동) 김포시 평생학습관 1층	031-8049-750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경기도	수원지부	(16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	031-213-0773	
	수원개인회생·파산종합지원센터	(16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4, 행복프라자 3층	031-213-0773	
	용인지소	(17019) 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1199, 용인시청	031-526-6439	
	오산지소	(18121) 경기도 오산시 궤리사로 59, 뽕엘빌딩 2층	031-8077-4790	
	성남출장소	(13144) 경기 성남시 수정구 산성대로 439, 영인빌딩 7층	031-748-6177	
	여주출장소	(12638) 경기도 여주시 현암로 21-9 (현암동 665-6) 윤영빌딩 3층	031-884-7640	
	평택출장소	(17848) 경기도 평택시 평남로 1052 (동삭동) 근원빌딩 5층	031-656-9144	
	안성지소	(17586)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3층	031-8057-9360	
	안산출장소	(15471)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한남법조타운 3층 305호	031-482-2769	
	안양출장소	(14055) 경기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 166 우양타운 3층 301호	031-382-6373	
	수원주택·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16500)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10, YM빌딩 3	031-8007-3430	
강원도	철원지소	(24040) 강원 철원군 갈말읍 삼부연로 51 철원군청내 1층	033-452-0677	
	춘천지부	(24372) 강원 춘천시 공지로 293 화남빌딩 3층	033-251-8301	
	인제지소	(24631) 강원 인제군 인제읍 인제로 205번길 9 인제읍사무소 부속건물 1층	033-463-4676	
	양구지소	(24523)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관공서로 14 구 보건소 1층	033-482-1320	
	화천지소	(24125) 강원도 화천군 화천읍 화천새싹길 45 화천군청 1층 민원실(재무과)내	033-442-6755	
	강릉출장소	(25463) 강원도 강릉시 난곡길 4(난곡동 108-11)	033-645-3163	
	삼척지소	(25922) 강원 삼척시 척주로 59, 3층	033-576-0620	
	동해지소	(25755) 강원 동해시 천곡1길 20-3 동해시청 제1별관 3층	033-534-3195	
	원주출장소	(26384) 강원 원주시 시청로 1 원주시청 9층	033-748-0763	
	횡성지소	(22580)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횡성로 374 2층	033-343-1320	
	속초출장소	(24822) 강원도 속초시 법대로 13, 2층 (동명동)	033-636-8511	
영월출장소	(26229) 강원 영월군 영월읍 중앙로 128, 덕포우체국 2층	033-373-191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태백지소	(26020) 강원 태백시 황지로 81 정민빌딩 2층	033-552-3066	
	정선지소	(26130) 강원 정선군 정선읍 봉양7길 16 정선종합사회복지관 1층	033-562-1320	
	평창지소	(25374) 강원 평창군 평창읍 평창중앙로 67 평창군문화복지센터 3층	033-335-1320	
충청 북도	청주지부	(2862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70번길 18, 뉴월드프라자 602호	043-284-7777	
	괴산지소	(28029) 충북 괴산군 괴산읍 읍내로13길 50 괴산읍사무소 2층	043-833-2132	
	진천지소	(27832) 충북 진천군 진천읍 상산로 13 진천군청 내 농협출장소 1	043-532-5132	
	보은지소	(28947) 충북 보은군 보은읍 삼산로 50 (보은읍 행정복지센터 2층)	043-715-6026	
	충주출장소	(27361) 충청북도 충주시 계명대로 24 덕창빌딩 5층	043-854-0402	
	음성지소	(27704) 충북 음성군 음성읍 중앙로 89 (주)KT	043-872-2132	
	제천출장소	(27169) 충북 제천시 풍양로 65 (주)KT 4층	043-646-5011	
	출장소	(29150)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항간로 61 1층	043-744-9600	
대전	대전지부	(35236)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042-472-9061	
	대전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35236) 대전 서구 둔산북로 121 아너스빌 3층 308호	042-472-9061	
	홍성출장소	(32226) 충남 홍성군 홍성읍 법원로 41, 제605호	041-634-4476	
	서천지소	(33645) 충남 서천군 서천읍 서문로 23, 2층	041-952-0372	
	보령지소	(33458) 충남 보령시 터미널길 29 보령우체국	041-931-0518	
	예산지소	(32428)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 155번길 28, GM빌딩 3층	041-333-9134	
	공주출장소	(32569) 충남 공주시 한적2길 47 성화빌딩 2층	041-857-6132	
	청양지소	(33328) 충남 청양군 청양읍 중앙로 155-4 (주)KT 2층	041-942-9758	
	논산출장소	(32939) 충남논산시 강경읍 계백로100(주)KT 1층	041-745-4478	
	부여지소	(33153) 충남부여군 부여읍 사비로41 군민회관2층	041-832-9932	
	서산출장소	(31988) 충남서산시 공림4로22, 현지빌딩 4층	041-667-4054	
	당진지소	(31777) 충남 당진시 청룡길 135 영진빌딩 2층	041-352-3957	
	천안출장소	(31198)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1로 26, 8층 (청당동, 키타워)	041-563-6174	
	아산지소	(31520) 충청남도 아산시 온천대로 1550 (온천동) 법조빌딩 3층	041-424-4100	
	대전주택·상가건물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	(35236)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북로 121, 1층 117호~121호	042-721-343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대구/ 경상 북도	대구지부	(420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헬메디치 5층 501호	053-743-1321	
	대구개인회생·파산중 합지원센터	(42013)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5 범어역 우방 유헬메디치 5층 501호	053-743-1321	
	칠곡지소	(39888) 경북 칠곡군 왜관읍 군청1길 80 칠곡군청 별관	054-976-5132	
	청도지소	(38329) 경상북도 청도군 화양읍 청화3길 10	054-373-8437	
	영천지소	(38891) 경상북도 영천시 역전로 36	054-705-6076	
	안동출장소	(36751) 경북 안동시 강남5길 20-20, 201호(정하동,지엔빌딩)	054-856-2595	
	영주지소	(36109) 경북 영주시 대동로 167, 2층	054-634-0338	
	경주출장소	(38154) 경북 경주시 화랑로 94 (동부동) 화성빌딩4층	054-775-5553	
	김천출장소	(39518) 경북 김천시 문당길 142	054-433-1780	
	구미지소	(39210) 경상북도 구미시 봉곡로 108 (봉곡동, 명성빌딩) 2층		
	상주출장소	(37160) 경북 상주시 북천로 39-1, 그린그레스빌딩 1층	054-535-3277	
	예천지소	(36821) 경북 예천군 예천읍 백전고원길 2, 2층	054-652-0568	
	문경지소	(36954) 경북 문경시 상신로 25, 2층	054-552-0701	
	의성출장소	(37339) 경북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67 대구지검 의성지청 내	054-833-5402	
	청송지소	(37433) 경북 청송군 청송읍 금월로 231 청송인재양성관 1층	054-873-3676	
	영덕출장소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화개길 33 (화개리) 203-11	054-734-1745	
	울진지소	(36326) 경북 울진군 울진읍 울진중앙로 53 (구 울진남부어린이집 1층)	054-782-3676	
	영양지소	(36538) 경북 영양군 영양읍 석영로 1419, KT 영양지사 3층	054-682-3676	
	포항출장소	(37572) 경북 포항시 북구 법원로 179 대유빌딩 5층	054-251-6111	
	대구서부출장소	(42637) 대구 달서구 용산로 141 (용산동) 그랜드타워 9층	053-561-0069	
성주지소	(40025) 경북 성주군 성주읍 성주읍4길 25 (구 성주군민회관 2층)	054-932-5132		
고령지소	(40135) 경북 고령군 대가야읍 우륵로 78 고령군산림조합건물 1층	054-956-5132		
대구주택·상가건물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	(42013) 대구광역시 수성구 달구벌대로 2461 디에스라이프빌딩 3층	053-710-3430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부산/ 울산/ 경상 남도	부산지부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3층	051-505-1648	
	부산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47511) 부산 연제구 법원로 20, 로제스티(동주)빌딩 2층, 3층	051-505-1648	
	부산동부출장소	(48052) 부산 해운대구 재반로 176 미진빌딩 4층	051-781-0710	
	부산서부출장소	(46726) 부산 강서구 명지국제8로 230 산양타워1동 8층 801호	051-710-7480	
	부산주택·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47511)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5번길 4, 5층	051-711-3430	
	울산지부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052-257-4676	
	울산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44643)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31, 울산법조빌딩 2층 201호	052-257-4676	
	창원지부	(51457)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4-32, 4층(오션타워)	055-266-3381	
	김해지소	(50944) 경상남도 김해시 우암로 175 김해법조타운 3층 304호	055-724-4280	
	진주출장소	(52676) 경남 진주시 진양호로293번길 16-6, 승소빌딩 6층	055-755-6922	
	하동지소	(52333) 경남 하동군 하동읍 군청로 23 하동군청 별관 1층	055-884-4670	
	사천지소	(52539) 경남 사천시 용현면 시청로 77 사천시청 의회동 지하 1층	055-835-1666	
	남해지소	(52420) 경남 남해군 남해읍 화전로 87, 2층	055-863-6038	
	산청지소	(52221) 경남 산청군 산청읍 산엔청로 1, 산청군청 신관 3층	055-974-3386	
	통영출장소	(53029) 경남 통영시 용남면 동달안길 38, 통영법조타운 4층	055-649-1830	
	고성지소	(52943) 경남 고성군 고성읍 성내로 130 고성군청 남별관 1층	055-673-4636	
	밀양출장소	(50419)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15, 화승빌딩(구.송림빌딩) 4층	055-356-5131	
	창녕지소	(50317) 경남 창녕군 창녕읍 군청길 1, 창녕군청 별관(행복관) 2층	055-533-9814	
	거창출장소	(50129) 경남 거창군 거창읍 거열로 4길 28	055-942-8436	
	합천지소	(50238) 경남 합천군 합천읍 황강체육공원로 93 문화예술회관 3층	055-934-1315	
함양지소	(50041) 경남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4 (기관단체청사 1층 103호)	055-963-9029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마산출장소	(51719)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서동3길 16 신우희가로밀리온아파트상가 501호	055-247-7341	
	함안지소	(52040) 경남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95, 3층	055-584-4676	
	의령지소	(52144) 경남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 24길 31-1 의령군민문화회관 1층	055-574-4676	
광주/ 전남	광주지부	(61441)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062-224-7806	
	광주개인회생·파산 종합지원센터	(61441) 광주 동구 준법로 3, 2층	062-224-7806	
	화순지소	(58112) 전남 화순군 화순읍 동헌길 21-7 (주)KT 3층	061-375-7806	
	나주지소	(58263) 전남 나주시 시청길 22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내	061-334-7805	
	영광지소	(57036) 전라남도 영광군 영광읍 물무로2길 3	061-351-8981	
	곡성지소	(57537) 전라남도 곡성군 곡성읍 중앙로 59 (읍내리) 곡성군민회관 2층	061-884-7400	
	목포출장소	(58671) 전라남도 목포시 정의로 10 정의빌딩 2층	061-277-2002	
	영암지소	(58417) 전남 영암군 영암읍 열무정로 14 2층	061-473-7806	
	무안지소	(58532) 전남 무안군 무안읍 무안로 530 무안군청 후생관 2층	061-454-7806	
	함평지소	(57153) 전라남도 함평군 함평읍 중앙길 39, 함평군노인복지회관 1층	061-894-8400	
	장흥출장소	(59327) 전남 장흥군 장흥읍 동교3길5 정하리버하임상가동 402호	061-863-8856	
	강진지소	(59228) 전남 강진군 강진읍 탐진로 111 강진군청 민원실 내 2층	061-813-0030	
	순천출장소	(57932) 전남 순천시 왕지1길 15 순왕빌딩 401	061-725-8121	
	보성지소	(59455) 전남 보성군 보성읍 송재로165 보성군청	061-852-7804	
	고흥지소	(59543) 전남 고흥군 고흥읍 터미널길 11 고흥읍사무소 별관	061-835-7806	
	해남출장소	(59035) 전남 해남군 해남읍 중앙2로 22, 2층	061-536-9945	
	완도지소	(59122) 전라남도 완도군 완도읍 장보고대로 284-1 (군내리) 2층	061-555-1164	
	진도지소	(58923) 전남 진도군 진도읍 쌍정2길 34 해남축협 2층	061-542-7132	
광주주택·상가건물임 대차분쟁조정위원회	(61963)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28번길 4 세진빌딩 4층 401호	062-710-3430		
전라 북도	전주지부	(54868)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만성중앙로 54-30 (만성동) 만성법조타워II 4층	063-251-4034	
	진안지소	(55433) 전북 진안군 진안읍 중앙로 66 군민자치센터 2층	063-432-1345	

지역	기관명	주소	연락처	비고
	무주지소	(55517) 전북 무주군 무주읍 주계로 97	063-323-3254	
	김제지소	(54386) 전북 김제시 중앙로 40 김제시의회 1층	063-542-5028	
	군산출장소	(54079) 전북 군산시 검다메1길 64 영창빌딩 303호	063-452-6696	
	익산지소	(54644) 전라북도 익산시 고봉로18길 34, 영등1동 주민자치센터 2층	063-722-5100	
	정읍출장소	(56172) 전북 정읍시 수성5로 31-9 2층 204호	063-533-9644	
	부안지소	(56307) 전라북도 부안군 부안읍 석정로 179 (선은리, KT부안지사) 3층	063-584-5080	
	고창지소	(56433) 전북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39, 3층	063-564-5280	
	남원출장소	(55770) 전북 남원시 동헌길 110, 2층	063-626-5789	
	장수지소	(55631) 전라북도 장수군 장수읍 장천로 247 (장수리, 장수보건의료원) 구관 4층	063-353-1345	
제주도	제주지부	(63231) 제주도 중양로 359 신해빌딩 2층	064-753-9955	
	서귀포지소	(6358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 105 서귀포시청 제1청사 별관 3층	064-803-0681	

## 경청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상담방법

- 한 제목의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한다.
  -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가 단절되면  
'그 다음에는요?', '또 어떻게 되었나요?'  
라는 질문을 통해 내담자가 다시 이야기를 계속하도록 유도한다.
- 이야기 속 사건의 때와 순서를 명확히 알도록 한다.
  - 내담자에게 현실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사건의 인과관계 등을 알기 위해서 사건의 발생 순서를 정확히 말하도록 요청한다.
- 관찰한 대로의 느낌을 내담자의 말로 요약하여 표현한다.
  - 내담자가 노출한 이야기를 토대로 상담원이 느낀 생각을 조심스럽게 표현함으로써 내담자의 자기인식을 촉진시킨다. 예로, '~하는 것을 들으니 조금 긴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생각한 대로, 느낀 대로 표현하도록 격려한다.
  - 내담자가 말한 상담내용을 상담원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다. 그래도 내담자가 자유롭게 감정을 표현하고,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함으로

## [부록 4]

## 경청을 방해하는 잘못된 행위

- 내담자가 말하는 중간에 자꾸 끼어들어서 언어나 사고의 흐름을 중단시킨다.
- 자꾸 이야기를 재촉해서 내담자가 시간에 쫓긴다는 느낌을 갖게 만든다.
- 내담자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그의 생각을 넘겨짚고 성급한 결론이나 평가를 내린다.
- 내담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딴 생각을 하거나 자신이 대답할 말을 생각한다.
- 마치 마음을 정한 것처럼 ‘그래, 하지만’이라고 말하면서 내담자의 문제를 일정 틀에 맞추려고 애쓴다.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내담자를 평가한다.
- ‘그 이야기를 들으니 생각나는데’ 또는 ‘별 것 아니네. 내 얘기 좀 들어봐.’ 라는 말로 내담자의 말허리를 잘라버린다.
- 이전에 내담자가 이야기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다.
- 중요한 이야기인데 메모하지 않는다.
- 침묵이 흐르거나 이야기가 중단될 때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매뉴얼 2권 발췌

## 청소년상담자의 감수성 및 판단을 위한 체크리스트

### 1) 아동학대에 대해 버려야 하는 편견들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1]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

사실 뉴스에 부모로부터 학대 받은 아이들의 이야기가 나오면 깜짝 놀라요. 설마 부모가 자녀를 학대하겠어?라고 생각했던 탓이죠. 그런데 매년 아동학대 행위자의 80% 이상이 부모이고 특히 방임은 90% 이상이 부모에 의해 발생한다고 해요. 부모라는 이유로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으로 아이를 키울 것이라는 것은 정말 큰 편견인 것 같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2] 학대하는 부모는 친부모가 아닐거야

부모에 의한 학대의 경우 행위자가 계부모 혹은 양부모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한 경우가 79.7%나 차지한다고 합니다. 아이의 주보호자가 친부모이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사실 관계를 확인해야 해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3] 부모가 때리는 건 사랑의 매야

아이가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부모님들을 종종 만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것은 아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거예요. 아이가 잘못했기 때문에 때린다고 해서 아이의 행동이 고쳐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이유로도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이지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4] 한두 번 맞고 클 수도 있지

아이가 말을 안 듣는다고 때리는 부모를 보고는 흔히 하는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70% 이상이 최소 일주일에 한 번 이상 혹은 그보다 자주 학대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쩌다 한 번 본 것이지만 아이는 우리가 볼 수 없는 집안에서 지속적이고 음행적으로 아동학대가 이뤄지고 있는 셈입니다. 아동학대의 85% 이상이 '가정 내 발생'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울고 있을 아이들을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할 거예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5] 이 정도는 아동학대가 아니지

가정 폭력을 목격하거나 아동 학대를 당한 경험을 가진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 사회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아이는 물론 사회까지 영향을 미

치는 사안인만큼 현장에서 성급하게 학대 여부를 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학대 의심자에게 동조하는 언행은 삼가야 합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6] 아이가 맞을 만한 짓을 했겠지**

아동학대 피해 아동의 87.4%가 장애, 정서·정신건강, 적응·행동, 발달 등 이상소견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학대를 불러일으킨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히려 학대를 받아서 나타난 후유증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아이가 문제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 때리며 학대하는 부모를 보고 “나 같아도 때리겠다” “이런 애를 어떻게 키우나”라는 편견으로 바라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7] 이게 무슨 학대? 단순체벌 아닌가?**

아동학대를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받아온 아이는 만성화된 학대 피해로 인해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있을 수 있어요. 아이가 안전에 대한 확신 없이 가족에 의해, 가정 내에서 발생한 피해사실을 말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심한 관찰과 시간적 배려가 필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8] 아이가 어릴수록 학대 받을 가능성이 높지**

관련 통계에 따르면 10세~15세 아동이 피해아동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으니 생각보다 어리지 않아요. 그런데 이 연령이 되기 전부터 학대를 받았지만 아이가 어려서 학대라고 느끼지 못하다가 초등 고학년 또는 중학생이 되면서 학대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학대 후유증은 이때부터 나타나는 경우일뿐이니 나이와 상관없이 없는 것 같아요.

**[아동학대에 대한 오해 9] 있을 수도 있는 일 아닌가?**

아동학대는 반복·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초기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만성화되거나 아동사망이라는 치명적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어요. 아동학대를 단순히 가정사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높은 인권의식을 가지고 적극 나서야 해요. 또 ‘아이가 맞을 만한 걸 보면 학대가 아닐거야’라는 생각도 편견이니 버리셔야 해요. 아동학대에 만성화된 아이는 무력감과 좌절, 행위자에 대한 공포에 사로잡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동학대에 대해 버려야 하는 편견들 (대한민국 정부, 2017.08.13 13:30)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9075799&memberNo=30808385&vType=VERTICAL>



## 2) 가정폭력 감수성 체크리스트

- 여러분은 평소 가정폭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번호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1	가족에게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주는 행위는 가정폭력이다.	
2	가정폭력은 집안일이 아닌 사회적 문제(범죄)이다.	
3	가정폭력은 국가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4	가족이 아니더라도 가정폭력을 알게 되면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5	가정폭력을 신고받은 경찰은 즉시 현장에 출동해야한다.	
6	배우자를 학대하는 것은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7	가정폭력 피해자는 1366(112)에서 24시간 언제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8	가정폭력을 피해자 탓으로 돌리면 안된다.	
9	사랑이라는 이유로 폭력이 정당화 될 수는 없다.	
10	앞으로 가정폭력 예방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	

출처: 여성긴급전화 1366([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1.html](https://www.women1366.kr/_sub03/sub03_01.html))

### 3) 상담자의 윤리 지침

#### ① 비밀 보장 (confidentiality)

내담자에게 관한 정보는 타인에게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도움을 주기 위해서 관계인과 의논할 때는 본인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 ② 개별화 (individualization)

내담자는 각각 자신의 처한 상황을 반영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므로 상담자가 기존의 가치를 내담자에게 주입해서는 안 된다.

#### ③ 통제된 정서적 관여 (controlled emotional involvement)

내담자의 정서적 반응에 대해 상담자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개입하지 않고 감정을 통제함으로써 정서적으로 적절히 반응해야 함을 의미한다.

#### ④ 수용 (acceptance)

내담자가 처한 상황, 내담자가 한 일 자체를 받아들여야 함을 의미한다. 내담자의 행동양식이나 문제가 용납되건 용납되지 않건 간에 그들이 처한 내·외적인 상황, 그리고 행동을 이해하도록 노력하며, 그들의 장점과 약점을 그대로 이해하고 다루어 나가야 한다.

#### ⑤ 비심판적인 태도 (non-judgemental attitude)

상담자는 내담자 및 내담자의 문제를 도덕적인 기준으로 심판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⑥ 자기결정 (self-determination)

내담자 스스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을 의미한다. 상담자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대신 결정해 주는 사람이 아니며, 오히려 내담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라고 할 수 있다.

#### ⑦ 의도적인 감정표현 (purposeful expression of feelings)

내담자의 감정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감정표현의 뜻을 이해하며, 내담자의 의도에 적합하게 적절한 반응을 하도록 해야 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초기지원 매뉴얼 2권에서 발췌

##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지침

- 치유가 가능하다는 확신을 갖는다.
- 피해자의 상담 내용을 그대로 믿고 수용한다.
- 내담자의 큰 고통에 동참하고 함께 할 마음의 준비를 한다.
- 상담원 스스로 성에 대한 가치관과 입장을 검토한다.
- 가정폭력 피해자 스스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들의 힘을 믿고 스스로 실행하도록 격려한다.
- 내담자의 요구와 필요를 파악하고 해결을 위한 방법을 안내한다.
- 해결방안에 대한 탐색과 결정에서 야기될 위험요인에 대해 사전 고지한다.
- 피해에 대한 책임을 암시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지 않는다.
- 가해자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는다.
- 피해 후에 나타날 수 있는 후유증, 방어기제, 치유과정에 드는 기간과 단계에 대해 알고 필요한 도움을 준다.
- 피해자의 권리나 감정표현을 당당히 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고 돕는다.
- 비밀을 보장한다.

[부록 7]

## 청소년상담자 보호 및 소진 방지

### 1) 상담자 보호를 위한 학대행위(의심)자 대응 전략

□ 언어적 개입

- 감정과 사고 표현을 촉진하기
  - 상담자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감정에 대해 경청하고 반영함. 그 자체 만으로도 학대행위(의심)자의 잠재적인 폭력상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학대(의심) 행위로 상담자가 개입을 하는 것에 대한 불만,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도움
  -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만으로도 억눌린 감정을 많이 해소할 수 있고, 잠재적인 폭력 상황으로의 진전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음
  - 나아가 학대행위(의심)자의 불만과 분노를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서 학대행위(의심)자가 불만과 분노를 어떻게 다루었는지를 사정하여 학대행위(의심)자의 폭력 행동에 대한 대처방법을 모색함
  
- 말이나 행동에 간단명료하게 반응하기
  - 언어적 반응은 짧고 간단하며, 중요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언급함
  - 길고 두서없는 이야기는 학대행위(의심)자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음
  - 중얼거리거나 성급하게 말하거나, 본인이 말하는 것을 학대행위(의심)자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너무 낮은 목소리로 말하지 말아야 함
  - 그러나 한 두번의 표현으로는 초점을 맞추거나 메시지를 전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학대행위(의심)자에게 반복해주는 것도 필요함
  - 이 과정에서 상담자가 학대행위(의심)자에게 지나친 사무적인 태도보다는 온화한 태도와 함께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전달하도록 함
  - 모르는 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면 솔직하게 모른다고 대답하여야 함
  
- 문제해결방안 모색하도록 독려하기
  - 문제해결기술을 사용하는 것은 학대행위(의심)자가 작은 과업부터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우며, 비폭력적인 방법을 선택하도록 도움
  - 몇 가지 제한적인 사용이라 하더라도 폭력적 반응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고 그 효과

를 강화시킬 수 있음

- 학대행위(의심)자와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학대행위(의심)자의 폭력성을 자극하거나 도움을 주는 과정을 방해할 수 있음
- 모호한 말을 함으로써 학대행위(의심)자에게 불필요한 확신을 주지 않도록 함. 현장조사, 경찰 조사과정, 법정에서 어떻게 상황이 변할 지 알 수 없으므로 경솔하게 말하지 말아야 함
- 학대행위(의심)자에게 상담자로서 자신의 중요성을 보여주기 위하여 참견하고 모든 것을 안다는 듯 말하지 않도록 주의함

• 초점 전환하기

- 학대행위(의심)자의 감정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감정적으로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는 것로부터 학대행위(의심)자의 관심 주제를 바꾸는 것이 필요함
- 이를 통해 학대행위(의심)자가 다시 자제력을 갖출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도록 함
- 학대행위(의심)자가 강하게 반론을 제기할 때, 너무 작은 문제를 갖고 논쟁하지 말아야 함

□ 비언어적 개입

• 물리적 접근과 위치

- 학대행위(의심)자에게 접근할 때는 뒤나 정면에서 다가가지 않음
- 갑작스럽게 접근하지 않도록 함
- 학대행위(의심)자가 갑작스럽게 공격할 때 피할 수 있고, 신체를 공격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절한 거리를 유지함
- 잠재적 폭력성향의 학대행위(의심)자를 기다리게 하거나 혼자 자유롭게 움직일 있도록 내버려두지 말아야 함

• 눈맞춤

- 잠재적인 폭력발생 가능 상황에서의 눈 맞춤은 적대감을 가진 것으로 인식하게 하거나 공격성을 자극시킬 수 있으므로 똑바로 응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음
- 적절한 정도의 눈 맞춤은 학대행위(의심)자에게 관심과 신뢰를 갖도록 하는데 도움이 됨
- 오랫동안 시선을 고정하거나 한 곳을 지적하는 것도 자제하도록 함

• 몸짓에 대한 반영

- 상담이 진행되는 동안 상담자는 학대행위(의심)자가 보이는 행동과 몸짓을 주시하면서 그가 보이는 행동의 흐름과 함께 함

- 예를 들어 학대행위(의심)자가 앉아있다면 상담자는 학대행위(의심)자에게 객관성과 개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팔과 다리를 편안하게 한 채로 앉아 있는 것이 좋음
- 자세가 위협적인 태도가 아닌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 오해를 살 수 있는 자세는 피하도록 함
-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비언어적 표현에서 나타나는 학대행위(의심)자의 감정에 충분히 합류하도록 함
- 만약 학대행위(의심)자가 서 있고 신경질적으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함께 서서 움직이되 학대행위(의심)자보다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움직이는 것이 좋음
- 이러한 행동은 학대행위(의심)자가 자신의 감정에 상담자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함
- 폭력이 발생할 신체적 징조, 예를 들어 얼굴이 붉어진다든지 주먹을 쥐는다든지 위협적인 자세를 취하는 등 학대행위(의심)자가 흥분하는 초기 신호를 보였을 때 위험 가능성을 간과하지 말고 무리하게 상담을 진행하지 않음

[아보전 업무수칙 참조]

## 2) 상담자 보호를 위한 환경 구성

- 사무실의 안전한 환경 구성
  - 주 출입구에 경보벨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함
  - 즉각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암호가 있어야 하고 사무실내 경찰 혹은 119와 연결될 수 있는 비상벨을 설치함
  - 의자와 탁자, 가구는 견고하고 움직이기 어려운 것으로 비치함
  - 사무실은 의사소통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담자와 의뢰인을 분리시킬 수 있는 책상을 배치함
  - 날카로운 연필, 가위, 칼과 같은 잠재적 무기가 의뢰인의 눈에 띄거나 손에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 상담실의 안전한 환경구성
  - 상담실 내부는 너무 크지 않아야 하며 소파 등 편안한 가구를 배치하되 의자는 등받이가 있어 편안함을 주도록 함
  - 상담실 내 CCTV를 설치하고 부착된 CCTV를 통해 상담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함
  - 상담자와 의뢰인의 사이에 탁자, 책상 등을 두고 일정한 거리를 유지함. 약 1.5m정도 떨어져서 상담을 하는 것이 좋음
  - 전기 스위치 및 콘센트 등은 의뢰인의 눈에 잘 보이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 ▶ 덮개가 있는 콘센트를 사용함. 높은 곳에 설치하거나 벽속에 감추어 상담사들만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함
- 유리창은 개폐조절장치로 의뢰인이 열고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거나 안전강화유리를 사용하여 사고를 예방함. 개폐조절장치는 열리는 폭을 제한하거나 창문자식으로 문이 열려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며 경우에 따라 참운에 방법센서 형식의 전자장치를 설치함
- 상담실 내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자연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색과 따뜻한 온색 계열의 색채를 사용함
- 밝은 조명은 우울증, 혼란감 등의 의뢰인의 문제를 개선시킬 수 있으므로 다양한 조명형태를 혼합하여 전체조명, 부분조명, 작업조명, 직접조명, 간접조명을 적절히 구성하도록 함
- 상담실 내 위험유발 요인(예: 책상 위 유리판, 유리컵, 뜨거운 물, 집어던질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의자, 커터칼 등) 사용을 자제하고 안전한 물건(예: 플라스틱 컵 등)을 사용함
- 대기실에는 치료에 효과가 있는 편안한 음악을 틀어 놓을 것

### 3) 위험을 예방하고 대처하기 위한 상담자와 기관의 역할

- 상담자의 역할
  - 상담자는 의뢰인의 폭력이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비한 효과적인 실천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함
  - 상담자는 이성적으로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함
  - 상담자는 의뢰인에게 폭력이 문제해결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전해야 함
  - 상담자는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안전대책을 기관에 적극 건의해야 함
- 기관의 역할
  - 상담자에게 정규적인 안전훈련 및 신변안전 관련 교육 서비스를 제공함
  - 상담자가 경험한 폭력사건을 문서화하여 보고하도록 지지함
  - 가정 및 현장방문을 위한 위험관리 대책을 도입해야 함
  - 지역의 다른 조직들(경찰, 정신보건센터, 주민센터 등)과 안전 및 위험관리 영역에서 상호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실제적인 협약을 맺어야 함
  - 폭력예방의 한 부분으로, 위험사정 및 개입에 대한 기관의 공식적인 전략과 안전대책이 분명하게 수립되어 있어야 함
  - 센터자과 수퍼바이저들은 상담자를 위한 안전한 근무환경을 확보해야 함. 이에는 기

관의 내외부 적절한 안전조치(예: CCTV, 카메라 부착형 초인종, 상담실 및 사무실 환경 정비 등)을 강구하는 것을 포함함

- 센터장과 수퍼바이저들은 의뢰인 폭력을 경험한 상담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수립해야 함

[아보전 업무수칙 참조]

#### 4) 업무방해 대처방안

상담자는 반복적·악의적 민원으로 인하여 업무가 방해될 때 아래 사항들을 당해 민원인에게 고지하여 민원인이 추가적인 방해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안내할 수 있으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나 안내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녹음한 후 경찰에 고소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음

지속적·악의적으로 재신고를 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민원전화를 반복하여 기관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는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제314조 제1항)에 해당될 수 있음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는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제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 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 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11.28. 선고 2013도4430 판결).

민원인이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여 상담원을 협박하는 행위는 「형법」상 협박죄(제283조 제1항)에 해당할 수 있고, 민원인이 전화를 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을 반복적으로 상담원에게 하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해당될 수 있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

민원인이 전화를 통하여 상담원에게 음란한 말을 하는 등 성희롱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성폭력처벌법상 통신매체 이용음란죄(제13조)에 해당될 수 있음

■ 성폭력처벌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록 8]

##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신고자 보호

1. 불이익조치의 금지 (가정폭력처벌법 제4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2, 제62조의2)

- 누구든지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범죄 신고자 등에게 범죄 신고 등을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됨. 신고자에게 불이익조치가 가해졌을 시 징역 또는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음

■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2조의 2(불이익조치 금지 위반죄)

①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자등에게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아동학대범죄신고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2.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3.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4.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계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5.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6.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2. 신고자 보호 : 신고자에 대한 보호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부터 제 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함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의3)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 7조(인적 사항의 기재 생략), 제 8조(인적 사항의 공개 금지), 제 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 11조(증인 소환 및 신문의 특례 등), 제 12조(소송진행의 협의 등), 제 13조(신변안전조치)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조서나 그 밖의 서류 작성 시 신고자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고자 인적 사항을 신원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함(가명조서)
- 누구든지 신고자 인적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안 됨
- 재판에 필요한 경우 검사에게 신원관리카드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나, 검사는 범죄

신고 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을 허가하여서는 안 됨

- 신고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영상물로 촬영하여 증거로 할 수 있음
- 증인으로 소환된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공판조서에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나 방청인을 퇴장 시키거나 공개법정 외의 장소에서 증인신문을 할 수 있음
- 검사 또는 경찰서장은 범죄 신고자가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 동안 주거지 또는 현재지에 다음 각 호의 신변안전조치를 할 수 있음

- ① 일정 기간 동안의 특정시설에서의 보호
- ② 일정 기간 동안의 신변경호
- ③ 참고인 또는 증인으로 출석·귀가 시 동행
- ④ 대상자의 주거에 대한 주기적 순찰이나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 주거에 대한 보호
- ⑤ 그 밖에 신변안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

### 3. 신고자 누설 금지 및 비밀엄수 의무(가정폭력처벌법 제18조, 제64조, 아동학대처벌법 제10조 제3항, 제35조 제1항, 제2항)

- 누구든지 신고자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됨
- 가정폭력/아동학대범죄의 수사 또는 보호사건의 조사·심리 및 그 집행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보조인, 진술조력인,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과 그 기관장, 상담소 등에 근무하는 상담원과 그 기관장 및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됨
- 가정/아동보호사건에 관련된 폭력행위자, 피해자(청소년), 고소인, 고발인 또는 신고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용모, 그 밖에 이들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출판물에 실거나 방송매체를 통하여 방송할 수 없음
  - ※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의 목적으로 신고자의 정보를 요청할 경우 신고자에게 해당 내용을 고지하고 동의여부 확인해야 함
  - ※ 신고자 보호를 위해 신고자 정보를 노출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하여야 함
  - ※ 가정폭력/아동학대행위자 또는 제3자가 이미 신고자의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는 신고자 정보를 노출하여서는 안 되므로, 의사소통 과정에서 무심코 누설 되지 않도록 주의함





# 서 식

1. 접수신청서
2. 가정폭력 피해청소년 평정척도
3. 서비스 연계 동의서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예시)

[서식 1]

## 접수 신청서

<input type="checkbox"/> 피해청소년 인적 정보						
대상자명		성별		나이		재학 유무
주민등록주소					전화번호	(아동)
실거주지						(보호자)
<input type="checkbox"/> 의뢰자 정보						
의뢰자 성명		소속/기관		전화번호		휴대번호
주소				대상자와의 관계		
<input type="checkbox"/> 접수 정보						
대상자 위기수준	<input type="checkbox"/> 고 <input type="checkbox"/> 중 <input type="checkbox"/> 저	응급조치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input type="checkbox"/> 무	이전 가정폭력 경험 유무	<input type="checkbox"/> 유(   회) <input type="checkbox"/> 무	
가정폭력 유형	<input type="checkbox"/> 신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방임 <input type="checkbox"/> 유기 <input type="checkbox"/> 언어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성적 학대 <input type="checkbox"/> 가정내 폭력 목적 <input type="checkbox"/> 기타(   )					
주요문제	<input type="checkbox"/> 안전(학대, 방임, 기타 안전)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신체 및 정신건강 문제 <input type="checkbox"/> 일상생활유지 문제 <input type="checkbox"/> 가족생활 문제(가족관계, 보육 간병 등) <input type="checkbox"/> 사회적 관계(친인척, 이웃, 동료관계 등) <input type="checkbox"/> 경제적 문제 <input type="checkbox"/> 교육 및 학습의 문제 <input type="checkbox"/> 취(창)업 및 직무수행 <input type="checkbox"/> 생활환경 문제 <input type="checkbox"/> 법률 및 권익보장 문제 <input type="checkbox"/> 기타					
호소내용 (가정폭력 피해 정황, 어려움, 도움받고 싶은점)						
접수자 의견						
연계 필요 유무	<input type="checkbox"/> 생활 지원 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이용 및 사례 관리 기관 연계 <input type="checkbox"/> 병원연계 <input type="checkbox"/> 법률자문연계					
개인정보활용동의	<input type="checkbox"/> 동의 ( <input type="checkbox"/> 동의서 첨부 <input type="checkbox"/> 유선/구두) <input type="checkbox"/> 미동의					

(출처: 2020 아동보호서비스 업무 매뉴얼 참조 및 각색, 아동권리보장원)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6. 가족이 이웃 및 친족과 왕래가 없다.			
또래 및 학교 영역	1. 지속적으로 술, 약물흡입(본드, 부탄가스, 락카 등), 도박을 하는 친구가 있다.			
	2. 친한 친구나 선배 중에 폭력 서클에 소속된 친구가 있다.			
	3.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4. 학교 선생님께서 자주 지적을 받는다.			
	5.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 위험정도는 점수 합계가 0~3 : 일반군 및 잠재군, 4~6 : 위험군, 7점 이상 : 고위험군

■ 예시 질문(초등학생의 이해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개인영역>

1. 자신의 외모가 괜찮다거나 잘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부족하다.
2. 하고 싶은 것이나 재미있게 느껴지는 것이 없다.
6. 학교 공부나 일상적인 일을 처리하는데 또래보다 많이 느리다는 이야기를 듣는다.
7. 야동과 같은 음란물 때문에 자주 지적을 받거나 문제를 일으킨 적이 자주 있다.

<가정영역>

4. 부모님이 거의 매일 술에 취해 있거나 게임이나 도박을 해서 가족끼리 싸운다.

<또래 및 학교영역>

1. 술이나 본드, 부탄가스, 도박을 자주하는 친구가 있다.
6. 아프다거나 하는 이유 없이 가기 싫거나 다른 것을 하려고 학교에 자주 결석한다.



〈Part 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초등학교 4학년 이하)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인터넷 중독	게임, 인터넷, 또는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해 일상생활 (예: 학업, 대인관계 등)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학교 폭력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			
	친구 또는 선후배에게 폭행을 가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들에게 심하게 따돌림이나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			
	같은 반 친구를 심하게 따돌리거나 괴롭히고 있다.			
가정 폭력	같이 사는 가족 구성원 중 내담자에게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가족 구성원 중에 내담자가 자주 심한 욕설이나 신체적 폭력을 가하는 사람이 있다.			
아동 학대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손이나 도구 등으로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심하게 소리를 지르거나 욕설, 헐박, 모욕을 주는 말을 자주 한다.			
	가정에서 보호자로부터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을 당하고 있다.			
	가정에서 보호자가 내담자의 형제를 심하게 때리거나 방임(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한다.			
가출	현재 가출한 상태이다.			
자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			

■ 예시 질문(초등학교 4학년 이하의 이해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아동학대〉

- 가정에서 보호자가 손이나 도구로 때리거나, 물건을 집어 던져 심하게 상처가 나거나 아픈 적이 있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심하게 욕을 하거나 쫓아내겠다고 헐박하거나 실수에 대해서 심하게 혼낸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주지 않거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형제나 자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자살〉

- 죽고 싶다는 생각이 자주 들고 실제로 방법을 생각하고 있다.



영역	“현재 내담자의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예	아니오	미확인
	3. 친한 친구 중에 조건 만남(성매매)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다.			
	4. 친구가 없이 따돌림 당하고 있다.			
	5. 학교 선생님과 사이가 좋지 않다.			
	6. 공부에 흥미가 없고 성적이 매우 낮다.			
	6.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적으로 혹은 자주 학교에 결석한다.			
지역사회 영역	1. 주거환경이 비위생적이고 위험하다.			
	2. 지역사회가 빈곤하여 청소년에게 필요한 지원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3. 이웃이나 지역사회에 욕설이나 폭행 사건 등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 위험정도는 점수 합계가 0~3: 일반군 및 잠재군, 4~6: 위험군, 7점 이상: 고위험군

■ 예시 질문(초등학교 5학년 이상 수준에 맞는 대안 질문)

〈개인영역〉

6. 학교공부를 이해하거나 일상적인 문제를 판단해서 처리하는 것이 많이 힘들다.

〈가정영역〉

4. 부모님이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 교도소에 다녀오거나 큰 벌금을 물은 적이 있다.

6. 부모가 우울, 불안, 환청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안되거나 정신과 병원에 다닌다.

〈Part 2〉: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초등학교 5학년 이상)

■ 예시 질문(초등학교 5학년 이상)

〈아동학대〉

- 가정에서 보호자가 먹을 것을 주지 않거나,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거나, 계절에 맞는 옷을 주지 않거나, 말없이 며칠씩 집을 비우기도 한다.
- 가정에서 보호자가 형제나 자매를 심하게 때리거나 제대로 돌보아주지 않는다.

## 위기 스크리닝 척도 활용 및 위험 요소 평정 지침

### 〈위기스크리닝 척도 활용〉

1. 아동 및 청소년을 처음 만났을 때(의뢰되었을 때) 바로 실시한다.
  - 위기스크리닝 척도는 상담자와 동반자가 내담자의 위기 상태를 즉각적으로 평정하기 위함이며, 내담자를 처음 만났을 때 바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척도를 활용하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내담자에 대한 최초 평가가 진행된 후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배정되었을 때, 이 척도를 실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이런 방식의 활용보다는 청소년이 의뢰되었을 때 최초 평가 결과를 토대로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이 척도에 평정하여야 한다.
2.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직접 평정한다.
  - 이 척도의 의도는 상담자 또는 동반자가 임상적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청소년안전망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조력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의뢰된 아동 또는 청소년에게 스스로에 대해 평정하도록 허용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이 척도의 애초 의도에 위배될 뿐 아니라 평정 결과의 신뢰도 및 타당도를 떨어뜨려 개입의 적절성을 해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한다.

1. 위험 요인 및 위기 및 문제행동 영역을 평정하고 의뢰에 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정자(상담원)”의 평가이다.

현장에서 내담자를 직접 만나고 평가하는 상담원의 전문적 판단이 위기선별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므로 평정자(상담원)는 내담자, 가족, 학교, 지역사회 환경을 주의깊게 관찰하고 이해하여 실제적 적합성을 높여야 한다.
2. 위기 스크리닝 척도 결과를 피동적이고, 기계적으로 수용하는 한계를 극복하여야 한다. 위험 요인 중에서 단 한 가지만 나타나더라도 이 요인이 내담자의 주관적 경험에 비추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를 이해하고, 이러한 위험요인이 청소년을 어떤 위기와 일탈로 이끌 수 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3. 제시된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 위험 요인과 특이사항은 별도로 기록하여 둔다. 위기여부를 최종 판단할 때 이러한 요인 또는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4. 위기스크리닝 척도에 나타난 위험 요인에서 “예”로 응답한 점수 총합에 따른 의뢰가 필요하다.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총점 고려사항〉

위험요인 조사	위기 및 문제행동조사	결과해석	비고
0~4점	없음	일반 및 잠재군 상담 사례로 다룰 수 있다.	
5~9점	없음	위험 사례로 볼 수 있으므로 위기상담 의뢰를 원칙으로 한다.	긴급한 위기상황 및 문제행동 유무를 탐색하도록 한다.
10점 이상	1개 이상	고위험 사례이므로 다양한 지원과 전문적 의뢰를 위하여 심층적 평가와 사례 관리를 실시한다.	

5. 영역별 고려사항

개인, 가정, 또래 및 학교 영역에서 한 영역이라도 2점 이상이면 위기상담 의뢰를 원칙으로 하는 영역별 잠재적 위험 사례이며, 4점 이상이면 영역별 고위험 사례이므로 각 영역에 필요한 지원과 전문적 의뢰를 위하여 심층적 평가와 관리를 실시한다.

## 2) 아동용 외상 증상 평가척도(TSCC)

각 문항에 대하여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하는 칸에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솔직하게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번호	내용	결코 그런일이 없다	가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빈번하다	거의 대부분 시간 그렇다
1	나쁜 꿈이나 무서운 꿈을 꾸다				
2	나쁜 일이 생길까봐 두렵다				
3	무서운 생각이나 그림들이 머릿 속에 문득 떠오른다				
4	야하고 지저분한 욕을 하고 싶어진다				
5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6	많이 다룬다				
7	외로움을 느낀다				
8	나의 비밀스러운 부분들을 너무 많이 만진다				
9	슬프거나 행복하지 않다				
10	좋지 않았던 일들이 자주 생각난다				
11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으려 한다				
12	무서웠던 일들이 생각난다				
13	소리를 지르거나 다부시고 싶다				
14	운다				
15	이유도 없이 갑자기 무서워진다				
16	화가 나면 가라앉지 않는다				
17	성관계에 대해서 생각한다				
18	어지러움을 느낀다				
19	사람들에게 소리치고 싶다				
20	내 자신을 해치고 싶다				
21	다른 사람들을 해치고 싶다				
22	다른 사람들의 비밀스런 부분들을 만지는 생각을 한다				
23	내가 원하지 않는 성관계를 가지는 생각을 한다				
24	남자들이 무섭다				
25	여자들이 무섭다				

번호	내용	결코 그런일이 없다	가끔 그런 일이 있다	그런 일이 빈번하다	거의 대부분 시간 그렇다
26	내 안이 더럽다고 느껴져 몸을 씻는다				
27	내 자신이 나쁘거나 바보같이 느껴진다				
28	내가 잘못된 것 같이 느껴진다				
29	어떤 것도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30	잊어버리고, 잘 기억하지 못한다				
31	내가 내 몸에 있는 것 같지 않은 느낌이다				
32	짜증스럽고 신경질이 난다				
33	두려움을 느낀다				
34	사람들이 성관계를가지고 싶어할까봐 그 사람을 만지지 못한다				
35	나에게 일어났던 나쁜 일들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36	싸움을 자주 한다				
37	내 자신이 너무 나쁘게 느껴진다				
38	내가 어딘가 다른 곳에 와 있는 느낌이다				
39	어두움이 무섭다				
40	성에 대한 생각을 하면 무섭거나 화가 나다				
41	모든 것을 걱정한다				
42	아무도 날 좋아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43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 기억한다				
44	성관계를 할 때의 느낌이 느껴진다				
45	텅 빈 느낌이다				
46	다른 사람들이 싫어진다				
47	성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다				
48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49	미칠 것 같다				
50	누군가 날 죽일까 겁난다				
51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란다				
52	죽고 싶다				
53	공상에 빠지게 된다				
54	사람들이 성에 관해 이야기를 하면 화가 난다				
총 점					

- 대상 : 8~16세(초등학생, 중학생)
- 척도내용 : Briere(1996)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 불안, 우울, 분노, 외상 후 스트레스 증상, 해리(명백, 모호), 성문제(몰두, 고통)로 이루어진 6개의 임상 척도가 포함됨
- 실시방법 : 아동용 자기보고식 평가도구
- 채점방법 : 결코 그런 일이 없다: 0점, 가끔 그런 일이 있다: 1점, 그런 일이 빈번하다: 2점, 거의 대부분의 시간동안 그렇다: 3점

구분	문항
불안 ANX	2, 15, 24, 25, 32, 33, 39, 41, 50
우울 DEP	7, 9, 14, 20, 26, 27, 28, 42, 52
분노 ANG	6, 13, 16, 19, 21, 36, 37, 46, 49
외상 후스트레스 PTS	1, 3, 10, 11, 12, 24, 25, 35, 43, 51
해리 DIS	5, 11, 18, 29, 30, 31, 38, 45, 48, 53
성문제 SC	4, 8, 17, 22, 23, 34, 40, 44, 47, 54
중복문항	11, 24, 25

- 해석지침 : 최고점은 171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외상증상이 높음을 의미한다.



### 3) 아동학대위험도평가척도(축약형)

#### 축약형

아동명: (□남 □여 / (만)연령:        세)	
학대행위자명: (아동과의 관계:                                  )	
적용일:                                  적용자:                                  (소속:                                  )	

평가 문항	점수	결정문항
1	아동에게 신체 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혹은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  아니오 (0)     예 (1)	<input type="checkbox"/> 즉각적인 조치필요
2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 (예: 깨진 유리나 술병, 낙상 위험이 있는 가옥 구조, 보호자 없이 아동 방치, 노숙 등)  아니오 (0)     예 (1)	<input type="checkbox"/> 36개월 미만 (비학대보호자 부재)
3	아동이 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보호를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한다.  아니오 (0)     예 (1)	
4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비학대행위자)가 없다.  아니오 (0)     예 (1)	
5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로 인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본 건 제외).  아니오 (0)     예 (1)	<input type="checkbox"/> 현재 임시조치 또는 보호처분 위반
6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개선에 대해 노력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아니오 (0)     예 (1)	
7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해 저항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아니오 (0)     예 (1)	<input type="checkbox"/> 폭행, 협박, 위계, 위력
<적용기준> * 총점이 3점 이상일 경우 조치 고려 * 총점과 상관없이 '결정문항'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조치 실시		총점 (                                  / 7점)
적용자 의견	<i>* 상기 문항에 없는 기타 위험 사항, 조치결정사항 및 그 사유 등을 기재</i>	

### 3) 축약형

● 축약형 척도의 고위험 기준은 3점(총점 7점) 이상으로 하며, 결정문항 중 하나라도 해당 하는 경우에는 점수와 무관하게 필요 조치를 결정함

- 축약형 척도는 최초 조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 및 사법경찰관리가 한정된 정보로 응급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다.

- \* 축약형 척도는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 최초 아동학대조사서에 첨부함
- \* 축약형 척도를 사용한 이후 추가 조사가 완료되면, 피해아동용·학대행위자용 척도를 필수 적용하여 국가아동학대정보시스템에 첨부하여야 함

#### 결정문항

(문항1) 아동에게 신체 외부 손상이 관찰되거나 신체 내부의 손상 혹은 정서적 피해가 의심된다.

→ 아동에게 즉각적인 처치가 필요한 경우 해당.

- \* 다발성 상흔이 관찰될 경우 내부(장기) 손상을 의심해 볼 여지 있으므로 주의 깊은 관찰 필요
- \* 우울, 불안, 환청 등 심리·정서적 징후로 자·타해(자살 등)의 위험이 높을 경우 즉각적인 처치 고려

(문항2) 아동의 주거 환경에 아동의 건강이나 안전상의 위험요소가 있다.

→ 피해아동이 36개월 미만일 경우 해당. 단,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비학대 보호자가 존재하는 경우는 제외

- \* 비학대보호자라 할지라도 학대행위자를 옹호하는 경향 등이 나타날 경우 조치 고려

(문항5)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로 인해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본 건 제외).

→ 본 건이 접근금지명령 등 임시조치나 보호처분 기간 중에 다시 발생한 경우 해당.

- \* 아동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모두 해당

(문항7) 학대행위자가 학대행위의 중단을 위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개입에 대해 저항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 학대행위자가 현장출동한 경찰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에게 폭행, 협박, 위계, 위력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 축약형 척도는 피해아동용과 학대행위자용 척도를 축약한 것으로 해당 문항에 대한 적용기준 지침은 생략함

#### 4)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적용 관련 Q&A

Q	1.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u>적용대상</u> 은 어떻게 되나요?
A	2015년 5월 1일부터 <u>신고접수된 아동학대의심사례</u> 에 대해 모두 적용합니다. (단, 조사 시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 척도 의견에 학대행위자를 만나지 못한 사유 및 척도 적용 불가함을 작성)
Q	2.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u>적용시기</u> 는 언제인가요?
A	조사 진행 중 또는 조사 완료 후, <u>초기 조치 결정 및 조치 변경 시</u> 에 사용합니다. 아동과 학대행위자의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진 조사가 완료된 이후 적용하여 <u>조사 마지막 일자에 척도를 추가할 것을 권장</u> 합니다. (개입 초기, 조치결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종결 등 <u>재사정 시에는 사용불가</u> )
Q	3. <u>결정항목 또는 고위험 기준 점수</u> 에 속할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A	결정항목에 해당되거나 척도 점수가 높을 경우(피해아동 고위험 기준 4점, 학대행위자 고위험 기준 5점), <u>아동 분리 및 아동학대처벌법 조치 등이 조치 결정되거나 적극적 고려</u> (경찰과 적극적 협의·논의, 기관 사례회의 등)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를 판단한 근거들을 적용자 의견에 작성해야 합니다.
Q	4. 아동학대 위험도 평가척도 적용자 의견에 어떤 내용을 적어야 하나요?
A	적용자 의견은 척도 적용 후, <u>조치 결정한 사유를 '필수' 작성</u> 하는 것으로 해당 척도 문항에 대한 근거와 조치 계획 등을 작성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척도에서 제시하는 조치고려, 결정문항에 해당되지만 미조치한 경우, 미조치한 근거, 사유 등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또한 <u>척도 문항 외의 위험상황에 대해서도 작성 가능</u> 합니다. 덧, 평가항목 번호, 항목내용 등에 대해서는 적용자 의견에 기록하지 않아도 되며, <u>척도적용결과 총점만</u> 적어주시면 됩니다. 예, <피해아동 적용 예시> 척도결과 총점 4점과 결정문항 1에 해당되어, 특례법에 의거한 응급조치 4호(의료기관으로 인도) 실시함.

[서식 3] 서비스 연계 동의서

(앞 쪽)

<b>서비스 연계 동의서</b>				
청소년 인적사항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		
연계기관 및 요청 서비스 내용	요청 기관		대상 기관	
	<input type="checkbox"/> 학교, 교육청(또는 Wee센터) <input type="checkbox"/> 경찰관서 <input type="checkbox"/>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input type="checkbox"/> 국·공립병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보호관찰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input type="checkbox"/> 학교, 교육청(또는 Wee센터) <input type="checkbox"/> 경찰관서 <input type="checkbox"/>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input type="checkbox"/> 국·공립병원 <input type="checkbox"/>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input type="checkbox"/> 청소년상담복지센터 <input type="checkbox"/>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input type="checkbox"/> 보호관찰소 <input type="checkbox"/> 기타( )	
	인계자	(서명)	인수자	(서명)
	(소속, 성명)		(소속, 성명)	
요청 서비스 내용				
<p>위 본인은 보다 전문적인 상담·보호·교육·의료·자립 등의 청소년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필수연계기관으로 인적사항 및 요청 서비스 항목 등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본인(또는 보호자) : (서명)</p> <p style="text-align: center;">관계(보호자의 경우):</p>				

## 필수 연계기관 및 연계서비스 내용

1. 경찰관서  
학교폭력(폭행, 모욕, 따돌림 등), 성폭력(강간, 추행 등) 등 범죄피해 신고접수 및 수사
2. 학교, 교육청  
학교폭력긴급전화 117을 운영하고 있으며, 각 학교별로 상담실이나 교육청에서는 Wee클래스, Wee센터, Wee스쿨 등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3.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전화 1388
4. 지방 고용노동청(지청) 및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저소득층 취업성공 패키지,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직장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지원
5. 국공립의료원 및 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6. 청소년쉼터 등 보호시설
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8.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

[서식 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예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예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내담자의 심층상담과 프로그램의 원활한 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항목 및 이용목적

가. 이용목적

- 위기 상황에 대한 개입 및 내담자의 심층상담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 서비스 프로그램 연계
- 재상담 요청 등에 따른 참고자료

나. 수집항목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름, 나이(생년월일), 성별, 소속기관, 연락처, 보호자 연락처, 주소 등 청소년 관련 정보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의거 ‘건강’,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등 민감정보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2. 14세 미만 청소년의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법정대리인 성명	(인 / 서명)
법정대리인 연락처	
법정대리인과의 관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필요시 귀하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 4항의 필수연계 기관(공공보건의료기관, 보건소, 지방고용관서, 경찰서 등)에 제공할 수 있음  
 동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4.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취득한 정보는 상담완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 및 보존 보존기간 경과시 즉시 폐기

5. 개인정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에 따른 서비스 제공에 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상기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위 내용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내담자 : (서명)

○○○청소년상담복지센터